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9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1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91)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1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1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6)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1)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0)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0)
 2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6)
 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5)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3)
 3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35.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

상정된 안건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4
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4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4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4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4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4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4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4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4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4
1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91)	4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4
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4
1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4
1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4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4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4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6)	4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1)	4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0)	4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4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4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4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5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5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5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0)	5
2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6)	5
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5)	5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5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5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5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3)	5
3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5
35.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5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

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1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391)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1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6)
1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3)
1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7)
1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1)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6)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1)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0)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1)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0)
2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6)
2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5)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9)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3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13)
3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44)
35. 합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6)

(10시04분)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번, 2쪽이 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를 위해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채용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군무원인사법의 경력경쟁채용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나 본 법률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특별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채용이라는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시험과의 연속성을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정부 측도 수석전문위원 제기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호 위원** 물어볼 게 있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공무원의 경력채용 조건과 특별채용 조건이 조건 자체가 내용에서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으면 용어를 통일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내용이 동일하게 운영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8쪽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군무원의 시보 기간을 현행 신규 채용 시 5급의 경우 6개월을 1년으로, 6급 이하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두 번째, 병가와 질병휴직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병가 및 출산휴가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징계처분 후 일정기간 동안 승진 및 승급을 제한하며, 군무원 임용 전 타 공무원 재직 시 받았던 징계처분 효력을 승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먼저 군무원의 시보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정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군무원은 동일 급수의 공무원에 비해 직급별 권한 및 역할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면 법령에서 정한 불이익이 적용되는 시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입법 실익에 비해 신규 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더 큰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결원 보충이 가능한 휴직 사유 확대와 관련하여 병가,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휴직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결원 보충이 필요하다는 점, 혹은 국가공무원법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 정지제도 신설 등과 관련하여 법적 체계 및 내용 측면에서 타당하며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 측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이 동일한 내용으

로 개정된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 검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 작년 기준에서 군무원이 약 4만 6000여 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요. 사실 이 수치는 저희 군의 특정 군보다도 많은 상황이어서 군무원의 자질에 대한 검증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했고 일부는 또 일반 공무원보다 형평성에서 좀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세 가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보 기간을 공무원과 똑같은 기간으로 6개월, 3개월에 있는 것을 1년, 6개월로 맞추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군무원이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는데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징계와 관련된 것들이 군무원들은 좀 구체화돼 있지 않는데 공무원에 준해서 있는 징계에 관련된 처분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개정안입니다.

국방부에서 발의한 정부안을 승인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지금 실제로 이러한 것 때문에 군에서 군무원들 채용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공석이 발생한 것을 조치 못 하는 게 대략 5급은 몇 명이나, 6급 이하는 몇 명이나 발생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세부 현황은 제가 좀……

○**한기호 위원** 실무자 알고 계시면 좀 얘기해 보세요, 실제 현황이 있어야지만 되니까.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공채의 경우에는 거의 100% 충원을 하고 있고, 일부 특수한 특기, 즉 약제·약무 이런 것과 관련된 공채 외에는 거의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현재도?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채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시보 기간의 영향은 저희들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휴직자 결원 보충 문제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휴직자는 지금 현역이든 군무원이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21년도에는 978명이었는데 22년도에는 1349명, 23년도에는 1575명 이렇게 휴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군무원은 그렇다고 그래도 현역은 어떻게 해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현역도 동일하게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역들도 지금 휴직자는 특히 육아에 관련돼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기호 위원** 육아휴직을 가면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현역은 없잖아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현역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겸무하는 인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상위 계급은 진급을 통해서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밖에서 놀고 있는 현역은 없기 때문에 현역에 대한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휴직이라든가 가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 동료가 그 임무를 맡으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지금 1인당 한 번 하면 월 20만 원 주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20만 원 받고 그 일을 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부수 병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수 병력 확보하는 노력을 안 하잖아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정원의 문제가 좀 있어서……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는 게 국방부장관이 해야 될 일이고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지.

군복을 입은 현역은 밖에서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예비역을 채용하는 제도를 만들든가 뭐가 있어야지 지금 1000명, 1500명씩 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옆의 사람 보고 대신해라 그러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신원식 장관님 계실 때도 그렇고 김용현 장관님한테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한 게 부수 병력에 대한 이 실태를 얘기를 해서 받아라, 받아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계급별로 예를 들어서 상사든 또 대위·소령이든 부수 병력을 확보해야지 부수 병력을 확보 못하면, 그러니까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부수 병력 확보하라는 말은. 그런데 그것을 안 늘리면, 실제로 야전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철원 지역에 가서 실제로 연대장들하고도 만나서—여단장이지요, 요즘은—이야기를 해 보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실무부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군무원들은 이렇게 조치를 해 준다 하더라도 현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육아휴직으로 내가 자리를 비우고서 6개월을 간다, 얼마를 간다고 했을 때 여성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일하던 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접 사람이 일을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서 하는 사람들이 20만 원 더 받고 그 일을 흔쾌히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업무 능력이 초과되지 않느냐 이거지, 두 가지 해서. 정말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능력이 초과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진단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정원 책정하는 부서하고 부서 대 부서로 협조를 해서 늘려야 된다니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한기호 위원님께서 오늘만이 아니라 늘 지적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무원인사법과 관련된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방위에다가 보고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신규 임용 군무원에 대한 시보 기간 확대를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입법을 함으로써 생기는 실익이 있고 또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실익이 아까 이야기한 거로는 자질 검증 및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

는데 이 자질 검증 및 평가를 하는 시스템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게 내 첫 번째 의문 사항이고,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단지 시보 기간만 연장하게 됐을 때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익은 없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불이익이 뭐지요? 보니까 불이익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평가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실효적인 어떤, 또 시보 기간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자질을 검증하는 관찰 기간을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임용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약간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저희가 군무원이라는 직렬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특정군보다도 사실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 주력을 뒀다면 앞으로 군무원을 또 다른 어떤 군인의 큰 영역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과 평가 과정들을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지금 우려하시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저희들이 찾아 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 시작을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군무원을 엄청나게 많이 아주 짧은 시간에 뽑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국방부나 각 군 본부나 예하 부대의 조직이 거의 미비해요. 평가 시스템도 그렇고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승진과 보직을 위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만이 시보 기간을 늘리는 것의 이익을 제대로 찾으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직 강화나 시스템 체계의 완비에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법률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하부적인 또 그런 조직들과 이런 체계들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관리자 편의 중심의 사고는 혹시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성이 왜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제안을 정부 입법으로 하시는 건데.

가령 시보 기간으로 신규 채용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1년에?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체 5급 이하들은 규정에서 6개월·3개월씩 시보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1년에 신규 채용되는 규모가 몇 명이냐고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인사기획관입니다.

3500명 정도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350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5급을 6개월 내에 어느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평가한다, 6급도 3개월 이내에 일을 시켜 가면서 평가한다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로는 보입니다. 적은 규모는 분명히 아닌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보일 때하고 시보를 떼고 난 이후하고는

급여라든지 대우에서의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없다면 모르는 데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인사기획관입니다.

대우나 연금 수급기간 가산 이런 거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지 시보 기간이 끝났을 때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전환하느냐 그거에만 관련 있지 대우나 복지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지금 6개월인데 1년으로 늘리면 나머지 그 6개월 동안 승진을 덜 한다든지 급여가 더, 시보를 뗀 이후의 급여하고 지금 받는 급여하고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6개월 시보 기간하고 6개월 이후에 시보를 뗀 이후의 기간하고는 급여 차이가 없다?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예, 급여에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당사자들에게 설명이 안 되면, 늘 고용이라는 게 시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고용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임종득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관리를 못 하니까, 35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다 관리 못 하니까 이것 심사하는 기간이 더 필요해서 이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신규 채용된 군무원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3번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도 지금 꼭 필요한지? 2번은 일종의 약간 인센티브 성격이 있지만, 아니면 우리가 군무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2번은 생각이 드는데요. 1번하고 3번은 사실 군무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징계, 승계. 징계처분 집행 관련된 규정은 저희가 보니까 23년도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때 그게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군무원법에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승계되고 유지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보 기간 우려하셨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통상 6급 같은 경우는 시보 기간 3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3개월이 다 그게 아니고 기본교육 받고 병과학교 가서 직무교육 받고요 자대 배치돼서 한 달 정도 관찰 받고 마지막에 임용이 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야전에서 하는 것은 한 달 정도인데 특정 직군 같은 경우는 직무교육이 많아 가지고 사실 관찰 기간이 거의 없는 직무에 배치되다 보니까 이게 면직을 시켜야 되는, 사실은 근무 수준이 안 돼서 해야 되는데 면직시킬 만한 관찰 기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임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야전에서 발생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늘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정부 측 입장과 수석전문위원 입장을 다 이해하게 되는데 그리고 일반직공무원들과의 여러 가지 체계를 통일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이런 시보 기간들을 좀 늘리고 그래서 관찰하고 적격자들 판정하는 그런 자질 검증과 평가를 해야 실익이 있는데 앞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지금 공무원 4급 과정에 대령이 대응되고 공무원 5급 직위에 중령이 대응되는데, 군무원 4급은 소령, 군무원 5급은 대·중·소위가 이렇게 대응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시보 기간을 늘리게 되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군무원 채용자들이 불만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대응의 불평등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아마 군무원들 본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간이 늘어나고 하니까 부담스럽거나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접근하게 된 본질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영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시보 기간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큰 불이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한, 대응도 일반공무원들과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대응해 주고 권위와 역할들을 수평적으로 조정을 해 줘야 이렇게 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사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조치들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병가와 질병 그다음에 출산·육아휴직 시에 결원을 보충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결원을 보충한다는 개념입니까? 대체근무자를 투입한다는 것인지, 지금 20만 원 보충 수당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정원을 늘린다는 건지 결원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병가를 통해서 6개월 이상 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출산 휴가 등을 통해서 휴직을 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6개월 이상이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개월 기간 동안 다른 대체인력을 뽑아서 거기 직무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영 위원** 뽑아서 한다라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허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업무하는 사람들에게 수당도 추가적으로 지급을……

○**국방부차관 김선호** 만약에 대체인력이 오기 전까지 하게 된다면 지금 같은 시스템이 그렇고요. 가령 이게 통과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인력을 뽑아서 보충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허영 위원** 저는 대체인력으로 보강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지난 시기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시보 기간 연장과 관련돼서는 정부 측과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도 허영 위원님 말씀처럼 군무원들이 사실은 시보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떤 제도적 보완 없이 법률로 1년, 6개 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심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잠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아마 이게 국방부에서 직접 파악했다기보다는 실무 부대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보 기간을 3개월 했을 때 부적격자가 할 수 없이 그냥 근무하는 경우가 실례가 있습니까?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단지 차관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보 기간을,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이 그 시보 대상자를 평가해서 계속적으로 군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특수한 일부 병과, 사이버라든지 수사 이런 데는 교육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군사정보는 심지어 32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자대 배치 오기 전에 시보 기간이 끝나 버리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서 그 첫 번째 하나고. 공무원하고 군무원의.....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잘못하신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얘기한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해당 부대,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무원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공무원들 하는 것 뒤에 따라가는 조직입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다 마치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시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용을 했다 이거야. 했는데 업무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있다는 게 파악이 돼서 이런 소요가 제기가 돼야지 ‘공무원하고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누가 이걸 수긍하겠어요?

이것은 너무나 국방부가, 제가 봐서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충분히 제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과 맞춥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야지 맨날 따라갑니까, 공무원들? 그래서 제가 1건이라도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이것 더 파악을 해서 전체회의 상정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조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16페이지입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용권자가 군무원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군인사법은 임용권자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에게도 이러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유로운 휴직 여건을 조성하고 일·가정 생활의 병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무원은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바, 군인과 비교했을 때 결원 보충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점,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도 임용권자의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인과 다르게 군무원에게만 임용권자의 결원 보충을 위한 노력 규정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다시 제가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 안 했어요? 이것은 당연히 기본 임무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법에까지 넣는다는 게 실익이 있느냐 하는 거야. 권장하는 거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한테 ‘공부 열심히 해’,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가 공부하는 자료를 주든가 이것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에 다른 데도, 아까도 했지만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넣습니다’ 얼마나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거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건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 12월에 군인사법 장교, 준사관, 부사관 개정을 할 때 그런 결원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군인사법에. 그래서 보충해야 한다라고 명기를 못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 정도로 표현해서 인사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같이 군무원법에 대한 연계성에서, 똑같은 문구입니다, 군인사법이. 그걸 포함시켜서 하자는 것을 홍기원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동의합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님, 우리 군대하고 공무원하고 인력 충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군 간부들하고 다른 부처 공무원하고의 차이가?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수행하는 임무와 역할 이런 것……

○**김병주 위원** 아니요, 편제와 관련해서. 정원 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실은 편제 인력의 100%가 안 되고 항상 한 90% 선만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휴직을 한다든가 하면 한 사람이 2인 역할을 하고 대체가 없잖아요. 공무원 사회는 다른 조직은 대부분 한 1.2배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대체인력이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군은 다른 공무원 조직하고 다른 부처와 다르게 운용을 하지요? 그래서 맨날 이것 보면 고통을 겪잖아요. 사실은 저 말단 대대나 연대 이런 말단 부대에서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충원도 안 되고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세 사람 뜻을 하고 특히 야간근무는 설 사람이 없어서 3일에 한 번씩 돌아오고 왜 자꾸 이렇게 운용을 해요? 조금 전향적으로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없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되려면 정원의 변화가 순수한 순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 군 정원을 순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공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다른 부처와, 이것은 행안부가 하는지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재부하고 협조를 해서 다른 부처 확인을 해 보고. 국방부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맨날 예산이 다른 부처보다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니까 이번 기회에 확인하고.

저는 법안 심의를 하다 보면 대다수 의견은 한기호 위원님하고 늘 일치해요, 실제. 그래서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아마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력해야 한다’보다는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법적으로 오히려 낫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아마 기재부가 반대하겠지. 그래서 기재부 평계로 안 되는데 이 정도라도 일단 가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저도 한말씀 드리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장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나가야 될 판이에요.

○**김병주 위원**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군인사법하고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군인사법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국가공무원법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맞출 건지 군인사법에 맞출 건지 이것도 아까랑 또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인사혁신처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한기호 위원** 넣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권장사항을 법에다가 넣으니까……

○**허영 위원** 넣지요, 군인사법에도 있으니까.

○**박선원 위원** 일단 넣읍시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국방부에서 동의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20페이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일정 지역 거주자 대상 경력채용 군무원에 대해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가 있을 때 필수보직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군무원에게도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규정하였으나 군무원의 경우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단 봤고요. 법률 개정 시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법적 명확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내

용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또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개정안 부칙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동 법률 개정에 동의하고요.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대신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기한 의견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자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지역에 부대가 많다 보니까 군무원들 전보에 대한 민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어떤 경우냐면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해 줄 수가 없느냐? 군무원들의 직렬이, 그분들이 근무하는 직책이 약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군무원들 중에서 일반행정 업무나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기능사, 자동차정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특화돼 있는 거예요. 특화돼 있는 분을 보낼 곳이 있느냐……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 이 얘기가 제일 많지요. 그런데 수도권에 그런 직렬에 빙 자리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를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없다,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지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을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법에 돼 있는데 왜 안 보내 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약전에서 자동차정비 분야다 이러면 속말로 사회로 말하면 기술자인데 그 분야가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지, 보내 줄 수 없는 경우. 보내 줘야 된다고 했는데 보내 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소화하시겠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 법의 취지는 조건 자체가 출산·양육·모성보호라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의견을 준 게 ‘대통령이 정한다’ 이런 모호한 것보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 때문에.

○**한기호 위원** 그래서 어제도 허영 의원님이 낸 초급장교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육아 휴직을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단기복무장교 육아휴직.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초급간부들한테 아파트를 안 줘요, 결혼을 했어도.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안 주니까 ‘얘기를 넣었는데 왜 아파트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초급간부들 중에, 어제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단기근무자가 임신과 출산을 했을 경우 아파트를 줘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국가시책에 맞추어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도 맞추려고 그러면 이분들의 전보에 대한 것도…… 사실 얘기를 넣고 얘기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갈 자리가 있어야 되지. 그런 것을 국방부장관 허가 사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렬이 없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것들을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승인해 주고 전보를 해 주자 그런 것이 취지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군무원도 제가 봐서는 뭘 먼저 도와줘야 되냐면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 그게 집이에요, 제일 큰 게 집. 초급간부들 단기근무자도 제일 큰 게 집이에요. 이게 해결되면 이 요구 자체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하나하나 분야별로 보지 마시고 둑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지……

군무원 업무 누가 담당하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인사기획관실에서 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군무원들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게 국방부는 편성이 공무원과 군인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군무원 업무를 할 사람을 편성할 수가 없지요, 법으로?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예, 법상 보직을 시킬 수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파견 운용하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오영대**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국방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시 군무원도 편성할 수 있다, 법을 바꾸세요. 파견해서 운용한다고 그러면 어느 부대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 그 자리는 빙 거예요. 왜 이것을 이런 상태로 계속 운용하십니까? 군무원을 제대로 챙기려면 군무원인 사람은 국방부에 근무를 해야지. 이 법을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드시잖아요. 왜 안 만드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지금 관련된 법안이 제의가 돼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닌데 군무원정책과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장 정도는 군무원에서 능력이 인정된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2개를 해야 돼요. 자꾸 제가 말씀을 야전이 어떠냐 물어보는게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야전부대 근무할 수가 없어요. 국군조직법에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편성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필요시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다라고 편성을 조직법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군무원은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도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야전과 실무 부대하고 교감이 된다니까요. 국방부는, 여러분들은 군인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안 가는 거예요. 이러니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지.

그래서 2개를 꼭 입법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제가 발의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정부가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무원도 복지 분야나 이런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해 주는 거에는 찬성하는데 원천적인 것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이것은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24쪽이 되겠습니다.

김한규·김현정·홍기원·이연희·이학영·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들은 군인이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해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무 수행 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숙지하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먼저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근거 마련 및 불복종 시 불이익 금지조항 명시 등과 관련하여 동 개정안은 군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 특성상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경찰을 비롯한 타 공무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군인은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위법한 명령인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명자가 자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 긴급한 상황에서 수명자가 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군의 지휘계통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군인의 경우에도 직무상 명령을 즉시 거부하는 방안이 아니라 경찰공무원 등의 사례처럼 명령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독일의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책임 면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것과 교육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기원 의원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헌법과 법률 준수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 법령 준수 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기에 군인의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는 이미 명기된 상

태라고 볼 여지가 있어 개정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의 두 번째의 의견은 수석 전문위원과 같습니다. 다른 판단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명령에 관련된 불복종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입장은 지금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본질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명령에 대한 모든 판단의 것을 수명자에게 다 판단하게 하는 무거운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수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자기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규정해 놓는 것은 아닌가 해서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규정에 보면 기본법 25조의 복종의 의무에 관련되는 것인데 기본법에는 복종의 의무뿐만 아니라 상관의 책무도 있습니다. 상관이 정당한 절차로 적법한 명령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공존해 있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개정안의 본질을 다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우선 저는 반대입니다. 군인이라는 특성 자체가, 우리가 야전에서 그러잖아요. ‘하라면 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비속어를 포함해서 이런 용어를 많이 하지요, 군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인은 숙명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살고 명령에 의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명령권자한테 있어요. 이번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상황에서 밑의 부하들에게 많은 책임을 묻고 있는 수사 개시가 통보되고 조사를 받고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과거에 12·12 때도 실제로 중간 제대 이하 지휘관과 군인들에게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총을 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령권자의 문제지, 밑의 부하가 지식도 많지 않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수명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군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지금 사회 자체가 자유주의 그리고 자기의 의사 표명 이런 것이 명확한데 군마저도 그렇게 간다면……

전쟁을 안 하면 상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항상 군이 존재한다고 볼 때 평상시에도 명령권자의 책임이지 수명자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수명자에게 책임을 묻고 수명자가 따지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명령권자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수명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대장 지금 20대예요. 중대장도 서른이 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수명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전적으로 한기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수명자가 판단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한 상태인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 짧은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게 위법인지 위헌인지를 그들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만약에 이게 법안이 입법이 된다면 수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같이 해 달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불복종과 관련된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악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생명이 담보되는 상황까지 명령을 하면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규정을 빌려서 그 위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복종하고 그걸 넘기려고 했을 때 군의 기강이 과연 서겠느냐라는 부분까지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저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수명자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너무 의존해서 오히려 혼란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권자의 명령을 오히려 합헌이라든지 합법적이라든지 제도적 틀에서 규제하는 게 우선이어야지 수명자에게 이렇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관련해서 여러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정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의 명시 및 교육 실시 이것은 필요하다, 최소한으로.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27페이지 보면 김현정 의원부터 김한규 의원 등 다섯 분의 법안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25조(명령 복종의 의무)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손대기 어렵지 않나?

이것을 두고 임 위원님이나 한 위원님 생각하고 종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김현정 의원처럼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나 신고의무 혹은 용해인 의원안에 있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안은 25조 명령 복종에다가 바로 붙여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현정 의원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도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내란 하겠어요?

그리고 군에 있는 짧은 사병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 교육받은 사람이고 다 알거든요. 그리고 바로 직속 상관하고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위법적인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식선에서 다 안다, 그러니까 거기에 헌법과 법률 준수의무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인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도를 명령 복종 의무에다 바로 집어넣기보다는 별도의 항목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소화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저도 명령권자·수명권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항명을 법적 근거로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국가경찰법에 따르면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여기도 ‘적법성 또는 정당

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정보원법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범죄가 될 수 있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절차상의 이의 제기와 명확한 범죄가 수반되는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좀 필요하다, 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박정훈 수사단장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군검찰에서 항명죄로 기소를 하잖아요. 항명죄로 기소를 하고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례를 보면 군사재판법상에 명령 적법에 대한 이의 제기 조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최소한도로 이게 사후적 문제, 그러니까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군이 위법과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군사재판 과정에서 박정훈 단장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해서 그게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명령의 적법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이것은 군인권과도 관련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라는 선서도 있잖아요. 선서도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군사재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이거 항명이야' 해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는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무죄야'가 아니라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연하면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문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군인복무 기본법에 있는 복종의 의무는 군인들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는 사실은 전시·평시를 망라하지 않는 복종의 의무를 다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람들의 이의 제기와 군인이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같은 선상에서 논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도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같은 맥락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의 제기라는 말을 짊어넣는 것은 사실 지금 여기 개정안으로 넣어놓은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명령에 불복종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에 훼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종의 의무 이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고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 내려갈 수 있는 영역에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책무, 이것에 대한 제재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그래서 전시나 이런 것에 다 적용하는 불복종이나 이의 제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군인은 반드시 자신의 상관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상관의 명령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완전하고도 양심적으로 즉각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규정과 더불어서 ‘다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직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내려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광범위한 불복종이나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많은 의원들이 동일 법안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를 수반하는 명령, 존엄성을 훼손하고 직무 외의 목적 그리고 전시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의 제기나 불복종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모든 명령을 다 그냥 명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시대의 국제적 범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그 취지에 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황 속에서 나온 그런 개정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맞습니다. 저희도 독일에 관련된 법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앞부분까지 하면 ‘군인은 반드시 자신의 상관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상관의 명령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완전하고도 양심적으로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가 전제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목적 이외의 내려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다’라고 돼 있지 그런 명령에는 복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선택적 판단을 넣은 것이 아니고……

○**허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범죄가 될 수 있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것은 불복종을 명시하고……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를 들면 저희 같은 표현이면 범죄가 될 수 있는 명령은 불복종해야 된다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권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허영 위원** 아닙니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고.

○**허영 위원** 우리도 이런 체계로 해서 전제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같이 명시하면 되는 것인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저희 법률안에는,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것 보면 ‘위헌·위법한 명령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김한규 의원님이 내셨고 또……

○**허영 위원** 여기에 수정의견을 이러한 독일 체계에 맞게끔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 식의 표현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 이런 표현은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라 나중에 갔을 때 행위에 대한 그것은 불복종이라고 보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말들은 독일적 관점에서는 쓸 수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그 정도 수준은 검토는 가능한……

○ 소위원장 부승찬 잠시만요.

이게 계속 논의하면 시간이 갈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그러면 32페이지 홍기원 의원안 수정의견에는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령을 발하는 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아까 국방부의 입장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수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이 아니라 명령을 발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24조 1항, ‘군인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법규로 이것을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기존의 다양한 법규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요?

○ 한기호 위원 제가 좀……

○ 소위원장 부승찬 예.

○ 한기호 위원 군인복무기본법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39조에 의견 건의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다든가 하면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2항에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건의했을 때 받지 않는다고 돼 있고. 3항에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통보해야 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포괄적으로 군인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사실은 유권해석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서 45조의3(직무수행에 관한 형의 감면), ‘군사작전의 수행이나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부대의 지원을 하는 중에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군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포괄적인 건 군인복무기본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는 걸로 해서 한다면 제가 봐서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개 조문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권리구제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여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도 개선과 유익한 의견,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 이것은 건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법조문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32페이지요.

‘국방부는 개정안의 헌법과 법률 준수의무 및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 및 제24조에 대한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입장임’.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여기의 수정의견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낸 수정의견이고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거기에 동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마지막에 한 것이 이런 것 자체를 여기에 넣는 것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의무 자체가 이것보다 상위 범위에서 항상 전제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여기 법률에 이걸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가 같이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독일의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나치 독일의 제노사이드의 쟁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평가와 자성이 상당히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양립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규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취지와 목적, 선언적 의미로 선언적 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조는 그냥 두자 이거예요. 명령 복종의 의무는 그냥 두는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의무 부분하고 아까 여당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상관, 즉 지시 명령권자의 의무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규제를 해서 어떤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의라는 건 이미 그 안에 다른 생각이라는 말이 들어 있잖아요, 이의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꼭 되어야 된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 군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그대로 두되 나머지를 보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과거에, 최근에 발생한 그러한 일이 다만 한 삼사십 %라도 좀 제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좀 의견들이 갈리고 있어서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다가 계류돼 가지고 1년 후로 확 밀리면 어떡해요? 시간을 정하셔야지요.

○**한기호 위원**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 있어요.

○**임종득 위원** 공감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공감들을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박선원 위원** 이것 안에서? 이번 세션 안에서?

○**소위원장 부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34쪽,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발효된 협정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명시된 만큼 협정

내용을 개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들의 개정을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국방부 의견도 신중한 검토 의견이고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도 이것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안 바꾸기를 원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저는 노동이 국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여기에 이념적 색채에 대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ILO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근로보다는 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너무 이념적 잣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앞으로 개헌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개헌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나오는 근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근로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통제. 그런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성한,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와 또 자기주도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과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그런 가치적인 의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동을 통제하는 의미로 근로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또 국내에 있어서의 노동기본권의 확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큰 문제가 없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근로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근무자, 노동자, 노무자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보다는 근로자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좋은 용어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한 위원이 동의 안 하면 아무것도 통과 안 하는 일당독재도 아니고 1인 통치체제예요, 뭐예요? 한 위원님이 국방위에 오래 계셔 가지고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다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인데……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봤을 때 한 위원님께서 박 위원님 것 통과 많이 시켜 줬어요. 제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박선원 위원** 하나도 안 통과시켜 줬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저 하나도 통과 안 됐어요.

○**임종득 위원** 내가 봐도 통과시켜 준 것 많이 있는데. 아니, 여기 통과 안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분을 통과시켰어요.

○**박선원 위원** 한 위원님이 진짜 법을 통과시키냐, 마냐를 결정하시는 통법부의 수장이

신 것 같아요.

○**한기호 위원** 아니요, 저는 그냥 법조문을 읽었어요, 정의를 읽었고.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요청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법안이 제기되면 존경하는 위원님의 생각하고 안 맞아도 왜 이런 말을 할까 한번쯤 해 주셔야 되는데……

○**한기호 위원** 박선원 위원님도 4선 하시면서 국방위 떠나지 말고 계속 계시면 돼요.

○**박선원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이렇게 만장일치제 비슷하게 가실 거예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에요, 제 것 할 때는 다수결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군부대 이전 절차를 규정하며 국방·군사시설 이전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 법률에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심의위원회는 훈령을 근거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비상설 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규정 내용인 위원장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추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체적으로 부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정부 측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동의하십니까?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런데 기부 대 양여 심의 이것 전국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제 지역에서도 지금 제3보급단을 비롯해서 캠프마켓 등이 있는데 진척이 없어요,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간만 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진

행과 진척을 책임 있게 관리·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좀 정기적으로 짚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인천시청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지나치게 국방부 위주로 흐르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것 시정은 돼야 돼요. 그래서 비상설 위원회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 문제를 심의하는데 제한이 없다든지 뭐라도 이게 보강 보완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보시면 이게 구체적 명확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위원장을 누구로 해야 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은 무엇인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보완해서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모호성을 띠고 있고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중복성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위원장님, 12항 관련 내용이 두 건이 더 있어 가지고요 같이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법률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부대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군부대 이전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국방부 훈령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훈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절차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군부대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군부대 이전 방식은 동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과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이전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법의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된 규정과 유사하게 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군부대 이전에도 국방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 이전 절차 비교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부대 이전 절차와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부지 선정을 부대 이전을 요청하는 지자체장이 하느냐 아니면 국방부장관이 하느냐입니다. 현재는 기존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지자체장은 이전 건의만 하고 이후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된 후속 조치는 국방부장관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검토해야 될 내용으로는 개정안은 이전 부지 선정에 난항이 있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전이 필요한 지자체와 향후 이전될 지자체 간의 주장이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국무

총리의 조정으로 단시간 내에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군 공항 이전법에도 국무총리의 조정에 관한 내용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두 번째, 기부 대 양여 사업 절차 변경은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부 대 양여라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지자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보면 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 이익 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에 귀속되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전 부지 자체 찾는 것과 절차를 다 국방부가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 훼손될 수가 있고요. 국방부가 그것을 관여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실태조사하는 것은 현행법에 국방·군사사업 관련된 현황 통계를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제가 군 생활하면서 향토사단에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아까 박선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차원에서 부대 이전과 관련된 소요된 민원들도 많고 실제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많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지자체장이 건의를 하고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까지 지자체장 책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그냥 발의만 하면, 건의만 하면 그다음은 국방부에서 대체 부지도 선정하고 그것 결정하는 과정을 국방부로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떠넘긴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군에서.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민원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폭주할 거다. 왜냐?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건의했다’라고만 하면 민원이 해소되지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은 군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폭주할 것이고 되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방부가 여러 가지 국방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결정하면 지자체와 협의를 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자체하고 당연히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돼서는……

○**허영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협의를 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부지 선정을 말씀하십니까?

○**허영 위원** 아니요. 있는 군부대를 이전할 때 사실상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지요, 여러 가지 기밀 사항이라는 요구로.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게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허영 위원** 그래서 공동화가 일어나고 지역 소멸이 일어나고 그 부지가 수십 년간 또 나대지로 뒹굴고 그래서 지역은 망가지지요.

그리고 여기 실태조사에 매년마다 아니고 2년마다 여러 가지, 서너 개의 사항에 이전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이슈가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군사 관리 입법부에, 국회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쪽으로 알권리 차원에서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동일한 내용이 다른 법규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여기 법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시설국장님, 다른 보충 답변하실 게 있나 봅니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국회에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서 좀 중복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얼마큼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군 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 이전의 대부분은 같은 군용지 내에서 서로 이전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를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실질적으로 시설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방금 허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기부 대 양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에서

필요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쭉 협의가 되어지고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두 번째 안과 관련돼서 부동의해야 된다는 부분은 명확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허영 위원이 불만을 제기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군부대로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상 민간에 알려지는 게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부 측?

○국방부차관 김선호 마지막의 그 실태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인데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 법규 개정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아마 위원님께서 동의를 다 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고, 앞의 것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제는 좀 제한된다는 것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한기호 위원 저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실제로 현역으로 있을 때 해 보고……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철원 지역의 꽃밭이 군 사격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철원군에 내주고 사격장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데 총 6년이 걸려서 실시해 봤고.

그다음에 지금 신북 항공대 이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누가 부지를 선정하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지자체가 이전을 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춘천 시내에 있거든요. 그러면 춘천 지역이 아닌 곳으로 항공대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 군인들이 오기를 바라는 부대가 있고 나가기를 바라는 부대가 있어요. 그러면 오기를 바라는 부대는 일반 보병부대, 이런 진짜 사람만 있고 특별히 다른 게 없는 부대는 오기를 원하고 항공대는 나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나가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한 부지를 누가 선정할 거냐, 이것은 춘천시장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합의를 해서 춘천시장이 한 곳을 우리가 오케이 하면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절차도 지금 없고.

공항 이전은 대구공항 하나만 특별법으로 해서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법을 발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부대에다가 이전 부지를 선정하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전하는 부지를 지자체가 제시하고 군에서 합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실태조사는요? 실태조사에 대한 조문은……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실태조사 하는 것도 이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제가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이것도 실제로 군에서 해 가지고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군부대 땅 중에서 안 쓰는 곳 이것 지자체한테 계속 제공을 하도록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을 좀 보시면 군인들이 실태조사 하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은 안 하면 일이 없습니다, 그것 안 하면. 그런데 일을 스스로 벌이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속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군인에게 하라고 해도 안 하면 끝이에요, ‘우리 실태조사 할 게 없어’ 그러면.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요구를 우선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더 급하다고 봅니다, 자체 요구를 접수하면 무시할 수 없도록. 그래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허영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신북 항공대 이전에 대한 것은 벌써 10여 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자연되고 있는 게, 군이 적극적으로 합의해 주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요구하면 협의를 해 줘라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실태조사 해라? ‘할 게 없습니다’ 하면 끝이지 어떻게 할 겁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는 이게 지금 보면 현행법에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박정 의원안은 현행 실태조사 내용에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유휴 시설 이것만 규정되어 있으니 이전 대상 시설에 대해서 추가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명시적으로 좀 하라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은 없을 걸로 보여져요. 국방부도 의견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넣는다고 하시면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부대부지 내 군 주거시설의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부대부지 내 군 주거시설의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률에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군인 주거 복지의 향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15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위치한 군부대의 경우 부지 내 주거시설 건립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적용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 후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난개발 및 인근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하는 데 조금 부연하면, 사실 군부대부지 지

역은 주거지역 건축이라든지 충수 이런 제한들이 상당히 많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부대 주거, 군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개정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위원님……

○**박선원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소위원장 부승찬** 잠깐만요.

○**한기호 위원** 이것 건교부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부동의입니다.

○**한기호 위원** 안 되지, 그러면. 이것 유용원 의원이 냈지만 제가 이 법을 보고서 이게 군인들만 아파트를, 딴 데는 주변에 10층 짓는데 우리는 20층 짓겠다고 그러면 그 화살을 누가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국가 전체가 가는 것을 우리만 빼져나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기호 위원** 안 된다니까.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것은 깔끔한 것 같아요, 의외로 깔끔한 것 같고. 취지는 공감하나 이것은 사실은……

○**임종득 위원** 한마디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지금 건교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데 군에서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농촌지역이거나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저도……

○**소위원장 부승찬** 예, 말씀하세요.

○**박선원 위원** 우리 군에서 소요로 나오는 장소 위치가 대개 외곽이라서 오래된 저층 정리하고 새롭게 고층화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만 어느 정도 실링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용적률 250%밖에 안 되는데 500%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한 350%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해야 군 입장에서도 예산이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 기재부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 계속 생활하는 군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새 건물 지어서 산뜻하게 옮겨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건교부 때문에 안 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임종득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방금 제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선원 위원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필요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저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그 공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또 군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부처 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취지는 공감하나 지금 고도제한 같은 게

상당히 문제잖아요, 군부대 인접 지역의 고도제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연 극복이 가능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은 군 작전과도 연관이 되어 베릴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고도제한과 관련된 법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너네는 군인이니까 이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우리는 뭐냐, 그러면 각종 작전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것들 그다음에 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것들, 대공포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된다면 가능도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심적으로는 동의하나.

○박선원 위원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3건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동법 제6조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중 제1종 소음대책지역에 속하는 토지에 한하여 주거용시설, 교육·의료시설, 공공 시설 용도로 시설물을 신축할 경우 방음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외에도 미용실, 음식점 등이나 외양간, 돼지우리 등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철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제1종 지역에 속한 토지를 새로 취득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시설물 설치 시 이중창과 철제문 설치라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부과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을 뿐 시설물·토지 등을 종전대로 활용하는 것을 제

약하지 않고 있고, 24페이지 비교표에서 보시다시피 민간 공항의 경우에는 제1종 지역 내에서는 신축 및 증개축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소음대책지역별 용도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 공항의 경우 제1종 지역에 신축되는 주거용 시설 등에 한해서만 방음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소음대책지역 내 신축 및 증개축의 제한이나 용도제한지역 지정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된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법 제정 이후 최초 기본계획이 2020년 12월에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률의 정책효과를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본 후에 기본 계획 수립 주기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지금 방음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주거·교육·의료 이런 시설에 한해서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화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그동안 2020년부터 군소음법 적용했을 때 시설허가 신청이 한 2만여 건 중에 주거용에서 이렇게 방음 설치를 한 것은 한 26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기본계획 수립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자는 것은 사실 의도는, 개정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모든 계획은 사실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이런 것들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위해서 또 3년 단위로 하면 조금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5년 내에서 이것을 작성하는 기준 계획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저는 방음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여기서 아파트 이런 주택 외에 미용실, 음식점, 외양간, 돼지우리 이것을 의무화하는 게 과도한 규제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음에 대해서 사실상은 가축의 임신·출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은 그 지역주민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음식 먹고 식당에서 거주하고 또 식당의 손님들은 그런 소음피해를 당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까? 이 인식 자체가, 전제 자체가 개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요.

모든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3년으로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박선원 위원** 저기……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어쨌든 허영 위원님이 이런 예산은 계속 백업해 주실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허영 위원** 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박선원 위원** 국방부에서 새로 필요한 예산 소요는 허영 위원이 앞으로 계속 지원한다라는 정신하에……

○**허영 위원** 그럼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소음피해보상금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소음피해보상금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소음피해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종 지역은 1인당 월 3만 원, 2종 지역은 4만 5000원, 1종 지역은 6만 원으로 보상금이 일률 책정되어 있고 이러한 보상금의 기준은 2010년 확정된 대구비행장 소음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소음피해보상금 기준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수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입법례가 있는 반면 보상 관련 법률 등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보상 관련 법률에도 형평성 측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달라는 개정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 소음피해보상금의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금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법률은 2019년 11월에 제정되어 2021년 12월에 최초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2022년에 소음피해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법률의 효과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도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3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군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현행 법률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에 주민이 3분의 1 이상 포함된 민관군 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작성하는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 역할 및 주요 작전 등의 사전 설명 등을 위한 목적의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관군 협의체 구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 개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률에 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면 협의체 운영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훈련 도입 등의 경우 민관군 협의체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해당 부대의 장은 협의체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훈련 등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주민들 의견의 타당성 판단 권한을 해당 부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해당 부대의 장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이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어느 정도 구성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정부 측도 협의체에서 훈련 작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간다는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보상 지급 방법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저도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나 지역소음대책위원회하고 중복될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지역소음대책위원회나 중앙소음대책위원회에 민 쪽의 심의위원들이 참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실무자가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소음대책위원회는 자자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상 해당 군 부대 정도만 들어가고 대부분은 자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앙심의위원회는 저희 국방부에서, 거기에서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민간 인원이 절반, 3분의 1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정기 회의체 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여하튼 임시 회의체입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저희가 매년 소음보상액을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이 없다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임시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매년 열리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허영 위원** 보상에 따른 이의신청 외에 지역소음대책위원회에서 다른 건의 민원 사항에 대한 심의를 별입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거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이거든요. 소음대책위원회는 보상에 대한 건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외에 발생하는 소음 민원, 이것을 수용할 만한 다른 협의체 아니면 지역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의제를 넓혀서 그것을 수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간 측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제출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그러면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기본계획에 민관군 협의체를 이용해서 그런 내용을 논의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적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흥기원 의원님께서도 그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따다가 여기다 올린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민관군 협의체는 저희 군이 전통적으로, 법에는 없지만 부대가 지자체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아주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관군 협의체를 만드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소음에만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만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영 위원** 이게 법 명칭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 한해서 지역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소음대책위원회가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만을 위한 의제가 아니라 향후 기타 발생하는 소음 관련된 민원 의제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이런 추가적인 위원회 설치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제를 확대해야 된다, 그것은 관련된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현재 추가적으로 저희 법상에 소음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느꼈을 경우 주민이 요청한 경우에 저희가 소음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의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은 현재 법에서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취지 이해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나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산정한 것에 대한 이의에 대한 이런 위원회보다 추가적인 의견이 논의될 수 있는 문구들을 저희가 한번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운영계획 규정에 관련된 영에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예.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3건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마지막 안건 다루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심사자료 3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본인의 질병 치료가 장기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복무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와 관련해서 현행 법률에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상 대체복무요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청원휴가제도를 활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청원휴가의 연간 사용일수 상한인 60일을 초과하는 병원 입원 진료가 요하는 질병·부상의 경우 입원 치료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의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질병·부상 치료 후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유도하고 혼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분할 복무의 승인권자를 복무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권자를 복무기관의 장이 아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 분할복무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에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아니,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분할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승인권자입니다.

○**한기호 위원** 중앙병무청장이?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방병무청장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병무청차장 최규석**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케이스는.

○**한기호 위원** 소속기관의 장이 아니고?

○**병무청차장 최규석**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타당한 것 같아요.

○**한기호 위원** 가세요.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끌낸다고 하니까 의견도 없어요?

○**한기호 위원** 누가 해 주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승인권자가 누구냐고.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병무청과 방사청 소관 법률안 심의가 있는데요.

장관직무대행님께서 카메룬 국방장관과의 전 행사부터 시작해서 회담이 계획돼 있어서, 병무청 차장과 국방부 국장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직무대행님의 오후 불출석을 인정해 주시면 불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소관된 게 6개 남았거든요. 30분만 더 진행해서 제가 다 마무리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어떠십니까? 그래도 위원님들 이제 일정도 있으시고…… 6개 더 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27번부터 6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시지요, 빨리」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참고자료 3권, 5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전예비군 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특전예비군부대 우선 편성하도록 하며 특전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특전예비군 편성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특전예비군 편성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시행령 규정을 통해 특전예비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시행령에 규정된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특전예비군부대에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육군특수전사령부 복무자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경우 예비군 동원 기간, 훈련 횟수 등 특전예비군의 병역의무 부담 비중이 예비군법에 따른 여타의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이 부담하는 병역의무 부담 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11월 26일 국방위 법률안소위에서는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특전예비군을 의무적 방식으로 편성 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전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은 없으며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의 특전예비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특전예비군 양성을 내실화함으로써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더욱 긴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전예비군의 우선적 육성·지원 규정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어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과 같은데 명확하게 저희 정부에서 수정의견 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음 수정의견 표 개정안에 보면 2항에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지원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한 사람 중에서 편성한다’라고 바꾸는 것이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한 육성과 관련돼서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한다’ 이 말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이 문구 수정 내용이 전체적인 정부의 수정의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것 지난번, 작년에 검토했던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강선영 의원 발의에 대한 겁니다.

○**한기호 위원** 작년에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우선 예비군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비군은 전시에 전쟁을 위해서 쓰기 위한 자원이고 이 사람들은 임의로 특전사에 가서, 본래 자기가 편성된 예비군 업무 외에 가서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임의로?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원한 사람에 한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인 특전예비군 편성, 지역예비군과 관련된 특전사 출신 요원들을 예비군으로 편성한다라는 본질적 차원은 좋은데 그것을 강제가 아닌 지원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번 국방위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문구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는 지원한 사람으로 한다면 그 인원은 특전예비군에 편성이 돼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 논의할 때 지원자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있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장이 좀 상세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동원기획관 김신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지금 한 580명에서 770명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뭘 지원해 줘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이분들이 연 1박 2일 특전사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 약간 동원훈련 비슷하게 1박 2일 한 오류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예산 매년 편성돼 있습니다. 적지만 일부 줍니다.

○**한기호 위원** 이거는 일반예비군이 아니고 지원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특전사 그거는 별도로 편성돼서 지금 까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특전예비군 편성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편성해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지요?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역에 특전예비군 지역대, 특전예비군 중대라고 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편성은 돼 있는 상태에서 특전사의 지역 역할하고 연결해서 작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게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임종득 위원** 지금 특전사 요원들의 임무 자체가 전시에 적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 업무인데 지금 후방 지역에서 지자체별로 해서 특전예비군을 편성하는데, 좋다 이겁니다. 자원자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법으로 해 가지고 강제하는 거 자체가 이게 운영되어지는 목적에 비해서 너무 과한 입법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 육성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이 그 설립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과한 입법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우선적이 아니라 적극적.

○**임종득 위원** 적극적으로, 뭐 하여간 우선적으로 하는 거 한 발 뒤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결국은 지자체에서 말하기 나름이고 의미가 없어요.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전시에 이분들을 전투력으로 쓰겠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비군은 전시가 되면 써야 될 기본 장구류부터 총기까지 다 편성이 돼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전혀 그게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예비군 지역별로 편성해서 동호회 같이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제가 봐서는 좀 이상하다 이거야. 우리 국방부라는 곳은 전시에 대비해서 훈련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하고 이걸 하는 곳인데 이 예비군에 대해서 특전사 예비군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춘천에서 이분들이 모임할 때마다 가거든요. 매년 가는데 그냥 친목 도모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본인들이 이게 인센티브로 인정해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충성할 기회를 특전예비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라든지 의지가 있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 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렇게 가야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특전예비군대가 지역예비군대에 이걸 편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원들이 그냥 지역예비군대의 일반적인 대원으로 다 편성이 되는데 특전사에서 전역하거나 임무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면 거기에 임무를 줘서, 특전대가 편성이 됐다는 것은 그 대에 별도의 임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그냥 별도로 그 사람들만 모이는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이게 지금 제정 법안이 아니라 이미 있는 법안을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법안은 있는 거지요, 특전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예비군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허영 위원** 예비군법에 이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까?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정확히 말하면 거의 유사한 규정이 시행령에 있었던 것을 법으로 지금 올리신 거고요. 법에 올리면서 저희가 차제에 문구를 더 정확히 한 겁니다.

○**허영 위원** 아까 작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법화되면 만약 전시 있으면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지금도 예비군법에 지원예비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해지하지 않는 한 예비군으로서의 임무가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앞서 개정안에 ‘선발된 사람’을 ‘지원된 사람’으로 또 ‘우선적으로’를 ‘적극적으로’, 이 정도 수정을 가지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분들에게 전시가 되면 총기·탄약, 모든 장구류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우선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동호회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무기를, 싸울 수 있는 걸 전부 갖춰 주느냐 안 주느냐. 어느 쪽이에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지금 현재 특전예비군도 지역예비군 중대에 소속이 공식적으로 편성이 돼 있고 하게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지역예비군 안에 개인이 연령의 제한이나 이게 있어서 들어가 있는 거지 특전예비군이라고 별도의 단체로 있는 거는, 별도의 조직은 아니거든.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별도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총기·탄약 취급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예비군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32사 지역의 대전지역대, 50사 지역의 대구·경북지역대, 53사 지역의 울산지역대라고 해서 이렇게 각 사단 지역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별도의 지역대로 특전예비군대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게 한 500여 명이 돼 있는 거고요.

○**한기호 위원** 그래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런데 지금은 특전사 요원이 아니더라도 여기에는 누군가 편성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전사 한 요원들이 본인이 희망하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연령이 이제 지역예비군 연령에 해당돼서 그냥 일반 육군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는 경우는 양쪽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전사를 나온 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예비군으로서 대부분 특전사로 갑니다, 편성 자체가. 여기가 지금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름 자체가 특전예비군이라고 한 거는 특전사를 나온 그냥 예비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임무를 다 끝내고, 예비군의 임무를 다 끝내고 나서 나이가 예를 들면 40세가 넘었다든가 간부도 연령이 지났다든가 그래서 대부분 50대, 60대입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예비군에 편성되지……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그 임무가 이미 끝난 사람, 자기는 이미 6년 차까지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한기호 위원** 복잡하게 얘기해요. ‘대상자가 아니냐?’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일반예비군 편성 대상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예,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안 되지.

○**허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박선원 위원** 예비군 대상자가 아닌데 여기에다, 또 예비군법에다 집어넣는 거지.

○**한기호 위원** 일반예비군 법적인 의무가 끝난 사람들한테 전시 작전에 투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지금 현재 예비군법에는 의무로 있는 예비군과 지원에 의한 예비군도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법이 그러해서 예전부터 여성예비군도 있고 특전예비군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여성예비군도 총을 줘요?

○**국방부동원기획관 김신숙** 아닙니다. 여성예비군 임무 자체를 전투 임무는 배제하도록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전예비군은 임무 자체를 특전사에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해 왔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거 시니어 아미로 가서 안 돼.

○**소위원장 부승찬** 잠시만요.

직무대행님, 언제 이석하셔야 됩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행사가 14시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요? 그럼 좀 시간이 있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저는 지금 일반예비군 내에 있어서 이렇게 특전예비군대를 편성하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병역의 의무가 면제된 사람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전시에 전투력으로 써 먹는다?

○**임종득 위원** 아니, 동호회 활동 한다니까요.

○**한기호 위원** 괜찮냐, 이게.

○**박선원 위원** 안 돼, 안 돼.

○**허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저는 동의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반대예요. 이러면 안 되지. 예비군법에 별도 예비군법을 또 만드는 거지. 예비 예비군이지 그거는. 안 되지요, 그거는.

○**한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잘해 주자는 뜻의 법인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지요.

○**박선원 위원** 이게 자꾸 시니어 아미나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서 안 돼.

○**한기호 위원** 없는 게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데.

○**소위원장 부승찬**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답답하신가 봅니다.

한 번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다시 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좀 더 검토해 주세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게 하시고요.

○**박선원 위원** 지금 특전사 분위기도 안 좋은데 자꾸 이러면……

○**소위원장 부승찬**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8항과 29항은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위협의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한 검토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하단의 개정안 비교표를 보시면 두 개정안은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위협의회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수진 의원안은 행정구역 단위 방위협의회 우선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고 김영호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위협의회 활성화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방위법에 따라 동법 제5조에 따른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 예비군법상의 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시·군·자치구 이상의 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로 행정·재정적 지원이 다소간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동 단위의 방위협의회는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 내용이 반영될 경우 방위협의회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위협의회 심의 사항 및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영호 의원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방위협의회는 지역·직장 방위를 위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고 지역·직장 방위에 관한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 중 지역·직장 방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지역·직장 방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방위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직장 방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역·직장 방위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활동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선원 위원** 저는 이거 굳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시행령으로 이미 있는데 자꾸 법으로 해 가지고 군의 일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국민의 군대화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김영호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문민화 추세를 역행해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미 시행령에 있는데.

○**한기호 위원** 아니, 법안이 좋구먼. 왜 그러십니까?

○**박선원 위원** 안 좋아요. 이런 거 안 좋아요.

○**임종득 위원** 이게 필요해요.

○**박선원 위원** 군의 탈색화……

○**한기호 위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신 걸 박선원 위원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박선원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이렇게 군의 색채가 강화되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입니다.

○**한기호 위원** 방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 나라가 튼튼해지고 하지요.

○**박선원 위원** 아니, 시행령으로 돼요.

한기호 위원님 또 조금 지나 가지고 ‘아, 이거 괜히 법으로 했어. 다시 폐기해’ 이러시려고 그러시지요? 이런 거는 필요 없는 법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병과장 문제도 어제 논의가 됐지만 우리가 규정이나 훈령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법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 시행령만 가지고도 충분한 건 구태여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박선원 위원** 예, 없어요.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참고자료 4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야?

○**임종득 위원** 끝내는 거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방위사업법은 방사청 거니까 이석하시고……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 게 2개 남아서요.

○**허영 위원** 2개 남았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33·35 안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하고 병역법

은 제가 이석하고 여기에 각 차장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33항하고 35항, 2건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요? 나는 차례대로 그냥 6건인 줄 알았어요.

○**박선원 위원** 우리 약속은 다 깨도 되고……

○**소위원장 부승찬** 직무대행님께서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참고자료 4권 2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안건이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안규백 의원님께서 하신 게 저희 소관……

○**소위원장 부승찬** 33번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안 봐줍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뭡니까, 33항 아닙니까?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국방부차관 김선호** 죄송합니다. 33이 아니라 35번.

○**소위원장 부승찬** 35번하고 몇 번……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제가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참고자료 4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정법률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함정의 감항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제정 취지 및 조문 체계입니다.

제정안은 함정의 감항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 선박, 민간 항공기 및 군용항공기는 해당 법률에서 감항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함정의 경우 감항인증 관련 법률 및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외 선진국의 경우 함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항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 함정 안전 수준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함정 수입국에서 함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에서 제정안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및 조문 체계를 말씀드리면, 제정안은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검토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정 감항인증 시행의 전제조건 구비 여부입니다. 감항인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함정의 설계가 감항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정안 시행 이전에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제함정안전협회에서 제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준인 잠수함 감항인증 기준과 수상함 감항인증기준을 참고하여 감항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인데 NATO 기준 가운데 수상함에 대한 감항인증기준은 공개되어 있으나 잠수함에 대한 감항인증기준은 INSA 회원국에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INSA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추후 INSA 가입 시기 및 가입 이후 NATO 기준을 획득하여 감항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항인증의 대상이 되는 함정의 범위입니다.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수상함, 잠수함, 전투근무지원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정에 대해서만 감항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대통령령으로 잠수함에 대하여만 이 법을 적용하고 수상함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등을 심층 검토한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수상함의 경우 1972년부터 국내 독자기술로 건조·운용하며 안전에 대한 기술력이 장기간 축적되어 있으며 함정설계·건조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제정 취지가 함정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 인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함정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정안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선박에 대해서도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경찰용 선박에는 경찰이 운용하는 선박과 해경이 운용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경은 해경 함정이 군 함정과는 다른 체계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 해경 함정이 이미 해양경찰 함정 설계·건조기준 등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 특성에 맞게 설계·건조되고 있고, 함정 건조 시 선박 전문 감리사가 함정 성능에 대한 위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감항인증기준을 별도로 준용하면 사업 효율성 및 경제성이 저하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도 그 사용 목적상 군사용 함정과는 규모와 용도 측면에서 차이가 크므로 동 준용 규정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현행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제도와의 중복·상충 시 적용 방안입니다.

현재 함정 획득 시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품질보증 규격서와 감항인증기준의 내용 간 서로 유사·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에는 사업 지연, 업체 부담, 안정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제도와 감항인증 제도를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호 위원** 다 보고하실 거예요?

○**전문위원 류승우** 이게 제정법이라……

○**한기호 위원** 그렇지. 그래서……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오 수석님, 제정법은 본래 제정법 입법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제정법은 기본적으로 조항별로 다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청문회를 한번 해야지요. 공청회를 하고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할 수는 있는데 의결로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다 읽어 보고 왔는데 이것은 실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 조문에 대해서도 내용이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처럼 일부 부적합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걸 위탁해 가지고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것 공청회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발언권을 받고 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속기록에서 빼세요, 그러면.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장이, 여야……

○**한기호 위원** 권위를 침해해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여야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식사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 반입니까, 약속 시간이?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 의견 좀…… 그래도 지금 한기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제정법이고, 방금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생활했던 사람도 잘 몰라요. 그리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저도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선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사실 저도 들으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부승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6항까지 9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전문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18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병적 관리기간을 연장하고 질병 등 확인 필요 시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될까지 병적을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 및 병역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국방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통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정 전략산업 관련 분야 연구소·산업체를 해당 기관의 규모 제한 없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일정한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전략산업 관련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전직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법령 체계에서도 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반도체 업체, 이차전지

업체, 바이오 업체 등이 이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과 반도체 등 중점정책 육성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고 있고 배정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정안은 사실상 대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위하여 대기업 인원 배정을 제한하였던 과거 제도개선 연혁 및 병역법 시행령상 대기업에 대한 배정을 제한하고 있는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대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타당성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대기업 지원 제도 확대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보충역 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취지 자체가 중소·벤처기업 쪽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열려지는 순간 대기업 쪽으로 다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것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실은 중소·벤처, 중견기업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혜택을 받는 것이 대기업에 그대로 갑니다. 컨소시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의 기강 문란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만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 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외의 경우에는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개정안은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근무시간内外를 불문하고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무기간 중 품위손상행위를 하면 징계 처분을 받는 현역병과의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형태가 상이하므로 각각의 복무 환경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유사한 복무 형태를 보이는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형태의 특수성 및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시간 외의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필요성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우선 임종득 위원님, 발의를 하셨으니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이것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아마 아실 텐데 실제 유명한 연예인이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일탈행위들을 보임으로 해 가지고 그때 현역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 반응들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쪽이 많았는데 사실은 현역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형태만 다를 뿐이지 군역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는 일탈행위와 관련돼서 처벌하고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병무청에서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일과 이후에 통제를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업무가 생기고 하는 이 부분을 들어서, 그다음에 또 유사하게 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전문연구요원을 들어 가지고 그쪽에 맞추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원들까지를 포함해서 뭐를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사후적으로 일탈행위가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하여 나오게 됐을 때 처벌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 있어야만이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추가적인 일탈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역 복무를 하면서 휴가 중에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 현역병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일견 타당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무요원으로 가 가지고 병역이 오히려 병역기피의 대상이 되면서 사고만 친다 하는 쪽으로 수가 많으면 경고 처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외적으로 혼하지 않은 사례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병역자원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처지이고 한데.

어쨌든 징벌성이라고 하는 게 해당기관, 그러니까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제 사례가 발생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차장님.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징계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병무청 입장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 정신과, 수형자, 현부자 등이 다수가 복무하고 있는데 전체 4만 5000명 중에 이 사람들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근무시간 이외에 대해서 복무관리 내지는 품위유지를 포함시킨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품위유지 위반 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쉽지 않은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징계위 운영을 또 해야 되고 추가적인 행정 소요가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복무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 이외까지 직접적으로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회복무요원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여기 국방부 의견은 관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렇게 해서 사후 처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 예방이 같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보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 의견에는 동의 안 하세요?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사후적인 거거든. 그러면 다른 요원들에 대해서, 대체복무요원이나 다른 요원들에 대한 것도 같이 동급으로 봐 주는 거지.

지금은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개별법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했다고 하면 도로교통법 이런 법이 적용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병역법에 따라서 내지는 훈령에 따라서 따로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한기호 위원님 말씀은 ‘기강 문란행위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이 아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한기호 위원** 예.

○**박선원 위원** 그러면 뭐랄까, 여러 가지 소소한 일을 경고하자는 게 아니고 물의를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조차도 불명예를 초래한 그런 경우에 제한하자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무기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의 기강 문란행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짹 빼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여기에 대한 행위를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못 해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박선원 위원** 경고처분 할 수 있다 그 정도.

○**한기호 위원** 예. 그렇게 바꿔 주면 돼요.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일단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보니까 뒤의 테이블에 복무이탈이나 복무의무 위반, 여러 가지 경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임종득 위원** 심각해요.

○**허영 위원** 예?

○**임종득 위원** 심각하다고, 실제로.

○**허영 위원** 그리고 여기 경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횟수가 더할 때마다 5일간 근무를 연장하는 처분입니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허영 위원** 그런데 8호에 복무기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의 기강 문란 이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넣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은 이유는 뭡니까? 현행에도.....

○**한기호 위원** 그것은 여기 임 위원님한테 물어봐야지.

○**임종득 위원** 이게 너무 만연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평소에 관리는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이런 일이 이슈화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처벌하자는 거지, 경고조치를 하자는 거지요.

○**허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음주, 도박, 풍기문란, 기강 문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겁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위원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예.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보다는 처분을 하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정의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입법례도 찾아보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하는 방향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일과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있는 것의 신분이 민간인이냐 아니냐 이 논의가 벌써 여러 번 나왔잖아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는 민간인으로 봐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것을 민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봐도 오히려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습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2016년에.....

○**소위원장 부승찬**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의 일과 후 신분과 관련된 법원 판례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임 위원님, 저도 꼭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국방 당국하고 병무 당국이 12·3 일로 인해서 부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병역자원 중에, 물론 군대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간 자원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건데 여기를 때려잡느냐 이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임종득 위원** 그런 면은 아니고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은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도가 되고 이럴 경우에 ‘야, 이것 말이야,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내란 하고 난리치더니 만만한 사회복무요원 가지고 이러네’ 하고 병무청이 한 방 맞는 보도가 날 경우 이게 오히려 병무행정에 좋냐 그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가을에 한다든지 혹시 그러시면 안 되냐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임종득 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건데 이건 어차피 군역을 어느 형태로든 간에 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인원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들에 대한 일과 후의 통제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사람들도 불편한 거야.

○**박선원 위원** 그러면 임종득법으로 해요.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아까 제가 마저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쪽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거기서 복무기간 중이라는 것은 복무시간과 복무시간 외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허영 위원** 그리고 지금은 복무이탈이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이러한 경고 처분하에 연장 그런 처벌조항이 있는 거고.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허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법 위반 시비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복무시간 외에…… 만약에 복무를 이탈해 가지고 음주, 도박, 풍기문란하는 경우에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무시간 외에 사적생활 역할에서 이런 위반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 복무기간에 산정해 가지고 경고 처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권을 좀 약간 침해하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종득 위원** 그게 지금 현역군인들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현역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개들은 휴가를 나와서 무슨 사소한 저걸 해도 처벌 다 받습니다. 왜냐? 군역을 지금 끌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부승찬**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의 기강 문란행위로 인하여, 이 행위를 누가 규정합니까? 내가 어디서 고스톱을 쳤어.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게임을 했어. 이런 것들이 사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이걸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근무시간 중에……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근무시간 외적으로.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안대로 하면 말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개정안대로 들어가면 실태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사후에 예를 들어서 경찰에 입건된다든지 아니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 현재도.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현재도……

○**소위원장 부승찬** 복무기간이지만 복무시간 외적으로 현재도.

○**병무청차장 최규석** 그것은 개별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사법적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그렇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누가, 병무청에서 이걸 할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병무청차장 최규석** 그래서 품위유지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기준이 진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에 한해서 하면 오케이인데, 이게 사법적으로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임종득 위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병역법 30조에 보면 일반 형사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라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것은 알겠고 취지도 저도 알겠지만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밖의 기강 문란행위를 누가 판단해 줄 거냐 이거예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비슷하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8년에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4회에 걸쳐 학교 밖 음주를 했었던 경우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하는 것은 위법 판례가 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입니다.

○**허영 위원** 그것도 과중한 처벌이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소위원장 부승찬** 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고 이들의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허업 허가 금지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상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현역·예비역 등의 병역의무기간을 현행 45세에서 47세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영의무 연령 상한이 가중 적용되는 일부 병역의무자의 경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38세 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가 될 때까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다가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점에 귀국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등 현행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방식의 병역면탈 시도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적회복자의 경우에도 입영의무 면제 및 병역의무 종료 연령 상한을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할 경우에는 국적회복 혜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국적회복자의 경우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동 개정안 내용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사변·동원령 선포 시 현역 등의 병역의무기간 상한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인 입영의무 면제 및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상향함에 따라 전시·사변 중 병역의무기간 상한 연령을 함께 상향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전시·사변 중 병역의무기간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동 개정안의 주요 입법 취지인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 시도 방지와는 다소 무관한 내용이며, 병역의무 종료 연령과 연동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현재 일반적인 경우에 병역의무와 병역의무 종료 연령은 현재 각각 36세, 40세를 유지하되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시점에 귀국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등 현행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94년과 2010년 두 차례 면제 연령을 일괄 상향했던 사례가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금번도 14개 유형 전체를 상향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상향하자라는 의견이시라고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대상자들의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 정부가 입법해 가지고 유용원 의원에게 의원 입법으로 맡기신 거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기본적으로.....

○**허영 위원** 그렇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익히.....

○**허영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대상자들한테 ‘이것 이렇게 상향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따로 조사는 한 적이 없고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근거는 좀.....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영 위원** 어떤 데이터입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국적변동자입니다. 국적변동자는—국적이 탈자하고 국적상실자를 포함합니다—연간 한 4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이주자입니다. 국외이주자는 38세까지 연기가 되는데 그 38세 연령 이후에 집중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형국이 데이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8세부터 45세까지 입국자 연령으로 봤을 때 병역이 사실상 면제가 되자마자 38세, 39세, 40세에 전체 입국자의 한 92%가 들어오는 형태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연령 상향을 지금 개정안 4개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같이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43세 기준이 악용될 가능성은 또 없습니까?

○**한기호 위원** 악용되지요. 되는데……

○**병무청차장 최규석** 그게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허영 위원** 아니,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거지요.

○**한기호 위원** 압박감은 지금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38세 넘어서?

○**병무청차장 최규석** 작년 9월 30일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38세 기준으로 38, 39 그 해당되는 사람을 파악했는데 전체가 2035명이고 38세 때 바로 들어온 사람이, 최초로 입국한 사람이 71%가 1500명 정도 됩니다.

○**한기호 위원** 올려야겠네요. 올리는 게 이거는……

○**허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한정해서 올리든지, 그런데 이것을 전체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이것 반발하는 사람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지 정상적인 사람이 반발하는 게 아니지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는 건 그것은 막아야지요.

○**허영 위원** 당연히 그건 막는 건데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상향됐을 경우 생각하는 본인들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국방의 의무,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몇 년이 지나서 들어온다는 거는 막아야지요.

○**허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외국의 불법체류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했을 때 이 대상자가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의 사전 조사를 한 적이 있나 이런 거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따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한기호 위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가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제로……

○**소위원장 부승찬** 발언권을 받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임종득 위원님께서 계속 손 들고 계세요.

○**한기호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 안과 관련돼서 개정안대로 43세까지 상향했을 때 분명히 지금 의도적으로 면탈하는 부분 상당 부분은 막을 수가 있고 선언적인 입법 사례만 가지고도 그런

생각 자체를 많이 못 가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장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43세로 올림으로 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뭐 다른 게 있나요?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못 들어오니까 부정적이겠지만 그 외에 부정적인 것.

○**병무청차장 최규석** 복무관리 차원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추가되는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연령자이기 때문에 복무관리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자료 19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재외동포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취급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11호, 국적상실 후 국적회복자 이분들이 연간 발생 인원이 한 4000명 되기 때문에 동 개정안을 발의하는 취지가 가장 크게 부합하는 항목이 11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기호 위원** 손을 들고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시대 변화가 반영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결혼 연령을 봤을 때 결혼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38세라고 하면 결혼 적령기가 안 지난 거예요. 그런데 40세가 넘어가면 결혼 적령기가 지났다고 봐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봤을 때 손해를 좀 더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억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0세를 넘기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지금 38세에 결혼하는 사람들 이건 보통으로 보지 늦었다고 안 봐요, 옛날에는 아주 늦은 나이였지만.

그러면 이 38세를 정한 게 몇 년도예요? 38세라고 정한 게 몇 년도냐니까 뒤에 실무자들 계신 분 중에 아는 분이 없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2010년도 아니에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2010년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보세요. 벌써 15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사회활동하는 연령이 변화가 왔는데 15년 지났으면 이것도 검토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저는 연령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찌 됐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국적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일반 국적회복자, 내가 원웨이해서 국적 회복하겠다라는 사람이 38세 넘어서 들어왔어,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이것을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 국적회복자, 허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기호 위원님이랑 임종득 위원은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국적회복자들 중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병역기피 목적으로 38살까지 외국에 체류하다가 병역기피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도 그러면 병역의무를 해야 되

는 거예요? 그러면 국적 회복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몇 % 이상, 일반 국적회복자 중에 병역 기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 가족이랑 어울려 사유로 해서 외국에서 살다가, 사유들이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병역회피 목적으로 38살 넘어서 들어오고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데 그러면 ‘나는 국적 회복하는데 군대 가야 돼?’ 이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올리는 건 어떨까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위원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그런데 일반 국적회복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국적변동자에는 국적이탈자가 있고 국적상실자가 있습니다. 국적이탈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 3월까지 타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이고 국적상실자는 본인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한국인이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 상실한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둘 다 병적에서 제적되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외국인이지요. 그분들이 다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병역회피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이런 상황이 되고 이 사람들이 그 연령대에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한기호 위원** 좀 더 일찍 들어와서 회복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악의적인지 선의로 한 건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해요?

병무청에서 병역의 의무를 국민들이 전부 다 동등하게 지도록 하는데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병무청 아니에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기본적인 상향해야 된다라는 기본 취지는 저희가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위원님들께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완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조금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한기호 위원** 이것 청부 입법한 것 아니에요? 병무청에서 유용원 의원한테 부탁해서 한 거잖아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그거 아닙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 문경식**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기획조정관입니다.

지난 21대 때 김병주 위원께서 공정 5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원 발의를 해 주셨고요. 유용원 의원께서 본인이 아마 그중에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은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 정부 의견을 제가 읽어 보면서 병무청이 병무청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슨하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먼저 병무청장 같으면 이런 얘기 쓰지도 않을 거예요. 병무청이 청장이 바뀌더니 완전히 나사가 풀린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이것을 유용원법으로 해도 되냐고 유용원 의원한테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은 저는 학생운동 관계로 군대를 못 가서 아들 둘만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본인은 방위 제대했으면서 그게 43세, 한번에 5년을 늘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해외 생활을 10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주위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이런 병무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을 받아 봤다는 말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병무 자원이라든지 형평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한번 열심히 편지도 보내고 교포사회에다가 배너 광고도 내고 해서 우리나라 당신들이 와서 지켜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좀 한 뒤에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것이든 병무 자체가 징벌적 요소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 정도로……

마지막으로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훼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모든 해외에 있는 분들을 병역면탈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45세까지 병역의무가 전시동원 체제 내에서 있는데 이걸 47세로 늘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43세나 44세, 45세 정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것을 47세로 늘린다 이랬을 경우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는 지금 제가 55세이지만 만약에 전시나 이렇게 있을 때 저 스스로는 저라도 총 들고 나가서 싸울 거예요.

이런 걸 떠나서, 그러한 전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 연령 기준을 15년 지났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상향을 해야 되는, 정부 마음대로, 그런 것인가. 실제 그러한 나이 규정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대상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서적인 측면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입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의식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외동포들도 병역면탈 의도가 없는 재외동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늦게 왔지만 저도 한마디 할까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제 논의가 어느 정도…… 다음 것에 좀 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아니, 잠깐만. 이걸 연령을 몇 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요, 다음 것에 하시지요.

그다음, 전문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아니, 이건 내가 21대에 저도 유사한 걸……

○소위원장 부승찬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요.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다음 것 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언권……

○김병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 세. 발언권도 안 주고……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게 다 공평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워낙 시간적으로 심의를 오래해서 이 안건 하고.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늦게 온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2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 범죄자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의 병역 처분 변경을 금지하고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하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 등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의 병역 처분 변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상 수형자를 현역병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수형자 군 입영 허용 시 주변 장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지휘관의 관리 부담이 증가하며 군 기강 유지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의 수형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병역기피자가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범죄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병역기피자의 범죄 의도 실현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이 병역 이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각주에서 보듯이 최근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법령에서도 병역 기피·감면 목적 병역법 위반자의 보충역·전시근로역 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역 기피·감면 목적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 형 선고 시 분리 선고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법률에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병역 기피·감면 시도 목적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경합범인 경우 법원에서 형의 선고 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경합범의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병역법 위반 범죄 형량과 다른 범죄 형량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어 범죄 유형에 따라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병역 처분 변경 가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선원 위원**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 첫 번째 것은……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죄송합니다.

첫 번째 것은 이미 지금 병역법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부승찬** 예.

○**임종득 위원** 그 측면에서 이것 또 만들어야 되나 또 개정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것은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안건 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류승우** 위원장님, 두 번째 경합법 선고 분리 규정을 만약에 개정안에 반영할 경우에는 이 경합법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합법 규정을 반영할 시 앞에 조항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임종득 위원** 그래서 넣는 거구나.

○**전문위원 류승우** 예.

○**임종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허영 위원** 필요해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가는 걸로?

○**허영 위원** 수정의견대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위원장님, 수정의견은 다른 게 아니고 정부 쪽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을 즉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그냥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즉시로?

○**전문위원 류승우** 예.

○**김병주 위원** 왜 즉시 하려고 그러지?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에서 지금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즉시 할 이유가 있나요? 어느 정도 예고와 준비가 돼야지……

○**병무청차장 최규석** 하위 법령이 지금 불필요……

○**소위원장 부승찬** 시행령……

○**병무청차장 최규석** 시행령 개정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게 문제없다면……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공포 후 6개월에서 즉시로 수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예.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제도 논의된 사항인데 33페이지 논의 필요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과 함께 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러 관련 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 어제 전체적으로……

○김병주 위원 전체적으로 해요. 넘어갑시다.

○한기호 위원 어제와 동일.

○소위원장 부승찬 계속.

○전문위원 류승우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확인신체검사 시 진료기록 등 질병 확인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법률 규정에서는 확인신체검사 시 진료기록 등 질병 확인자료 요청 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시행령에 병역판정검사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확인신체검사 시에도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진료·치료기록 등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확인신체검사 시 진료기록 요청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실제 업무 과정에서는 일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신체검사 수행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반영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확인신체검사 수행 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자료요청 가능 기관의 범위를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등', '각 군 참모총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 및 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하위 법령에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제3자 열람을 허용하여 얻는 행정적 편익이라는 공익보다는 개인정보에 대한 환자의 권리 침해가 현저하므로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진료기록을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하는 의

료법 등 관련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수정의견에 보면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렇게 해서 수정의견이 됐습니다. 수정의견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가야 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병무청 수정의견에……

○**허영 위원** 아니,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확인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담당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병역자원국장입니다.

확인신체검사를 할 경우에는 병원에 치료를 했던, 계속 치료를 요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나. 그러면 병의원의 진료한 의료기록들이나 그다음에 실제 약물을 복용한 기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청구를 하는데요.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의 저촉이라는 부분으로 제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신체검사를 최근에 한 800 정도를 그동안에 해 봤는데요. 그중의 한 20% 정도는 실제로 저희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데이터들이 더 많이 확보가 된다면 실제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더 많이 색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행령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는 것이지 이게 법으로 격상돼도 똑같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령으로 했는데 안 하는데 법으로 했을 때도 합니까? 이게 지금 기관 간 의료법이나 이런 충돌 문제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지금 법과 법이 충돌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것 관련해서 의료법 개정 법안이 발의돼 있는, 그것도 같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영 위원** 국회에서도 국회증언감정법,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 안 해요.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될 경우에는 개별법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부분을 명시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허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안 한다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의료법 개정 관련해서는 본 조항은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에 의료법, 복지위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해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부 의견은 뭡니까? 지금 여기 의사협회 의견만 첨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동의하는……

○**허영 위원**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 복지부 의견이 없고 국회도 그런 어떤 법과 법 사이에서의 충돌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법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병무청이나 대안이 뭐냐 이거지요. 복지부 의견이 없잖아요. 정부 의견은 이견 없습니까? 여기서 정부 의견이라고 하는 건 병무청의 의견이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현재 시행령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상향하는, 기본적으로……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부승찬** 예, 말씀.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현재 복지위에 상정돼 있는 의료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거지만……

○**허영 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 발언에?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예.

○**허영 위원** 만약에 복지부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제가 달려가서 다시 이거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법을 통과, 이거 여기서 동의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일단 복지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병역면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의사협회…… 또 손 들고 해야지, 혼나려고.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의사협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의사협회는. 그러나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의사협회는 참고로 해야 되고, 복지부가 동의한다면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좀, 제출 자료 중에 학교 생활기록부 이걸 넣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진료기록 내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유사 조항이 지금 법 11조의2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병역판정검사와 거의 동일한 조항입니다. 여기도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요청했을 때 주는 거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한기호 위원** 요청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제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신체검사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발견되는 게 신장, 체중을 속여서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동안의 신장, 체중의 변화를 보려면 저희가 19세부터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신체검사, 자기 건강검진을 했는 경우에 그 변화 정도를 보고 다시 검사장에서 최근에 언론에 나온 케톤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면탈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체격 변화를 보려고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확인하는데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제출받습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그러면 신장, 체중 이 부분만 요청을 하게 됩니까? 전부를 요청하게 됩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다양한 학생 생활기록 사항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은 신장, 체중의 변화나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게 블러 처리해서 제출됩니까? 아니면……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필요 사항을, 저희가 해당 사항을 요청을 하면 해당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허영 위원 내용에 대해서, 기록부의 사본이 제출되는 게 아니라?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영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이거는 굉장히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요,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소위원장 부승찬 법조문에요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한기호 위원 생활기록부를 통째로 복사해서 보내는 건 아니다 그 얘기지요?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소위원장 부승찬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수정의견에.

○허영 위원 이게 개정안 주요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돼 있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 학교 건강기록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거 두고두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동의 여부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병무청기획조정관 문경식 위원장님, 기획조정관입니다.

정부 의견에 이견이 없다라는 내용의 복지부 의견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개정안에 동의하는 걸로 인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처럼 확실한가요?

○병무청기획조정관 문경식 예, 확실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저희가 보내 놓고도 번안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등의 복무 현황 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은 없으며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개인별 복무 상황을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복무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고 복무기관 간 복무현황관리 업무가 통일성 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주체를 복무기관의 장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31조의2제2항 조문 중 소속기관의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최규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공무원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해요? 뭘로 확인해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체킹하는 부분 말합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면……

○**한기호 위원** 병무청은 어떻게 해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로그인합니다.

○**한기호 위원** 로그인하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한기호 위원** 국방부는 어떻게 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저희도 로그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청사에 들어오면 얼굴 인식을 해서 딱 그 시간에 출입했다는 게 찍힙니다.

○**한기호 위원** 방사청?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대부분 근무하는 곳이 어디예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행정기관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런 전자 시설이 없는 경우, 전자 체크 시스템이 없는 경우?

○**병무청차장 최규석** 현재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병무청차장 최규석** 출근부에 수기로 작성하는 형태로……

○한기호 위원 전자시스템이 있으면 이걸로 해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없는 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병무청차장 최규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정보화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돈은 누가 내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병무청예?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안 돼 있는 데는 그걸로 예산 지원해 준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그 시스템으로 전체를 체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건 이미 벌써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됐네.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얘기를 해야지

○김병주 위원 이거 입법 청탁한 거네, 유용원 의원님한테.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왜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나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47쪽에 보면 다양한 법률이 있는데요. 비슷하게 기재부에서는 의무보다는 재량으로 하는 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입법례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영 위원 잘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49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에 지방병무청장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과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현행법상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 관련 사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일부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 반영으로 현재 병무청 고시에 따라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관련 사무 위임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선양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

○**병무청차장 최규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4항부터 26항,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그 외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심사자료 4권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부처 우주개발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동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등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상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은 방위사업법상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개발 활동이고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3개 법률이 모두 적용되어 방위력개선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 따라 사업 심의 및 추진 절차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반영 시 행정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법조문 체계 및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몇 가지 개정안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다부처 우주개발의 주체로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모두 방위사업청장 소관인바 국방부장관을 사업 주체에서 제외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우주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주무기체계와 개념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고 우주개발은 방위사업법에 따라서만 추진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를 수정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만 동 개정안이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방위사업청 단독으로 추진하는 우주개발사업의 근거가 미약해질 뿐만 아니라 적용 법률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우주무기체계 방위력개선사업의 근거와 다부처 사업 적용 특례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제17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다부처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법률 적용 특례만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수정안은 표현이 우주무기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주항공청과 협의를 해 왔는데 우주항공청 의견은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는 하는데 우주무기체계라는 표현을 우주개발로 변경해 주면 동의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여기 국정원 동의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다른 부처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우주항공청만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문구 조정을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국정원 동의했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박선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국방부장관을 사업 주체에서 제외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부처 우주사업에서 국방부장관을 제외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떤 의미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임종득 위원** 저도 이제 물어보려고요.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게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부처를 대표하는 건장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하고 방사청장을 이렇게 같이 넣었는데 지금 빼자는 의견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답변 좀 하세요.

다부처 사업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은 결국은 방위사업청장이 주도를 하는데, 그 의미 아

닙니까?

○전문위원 류승우 예.

○소위원장 부승찬 아무리 다부처 사업이라도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인데 당연히 국방부장관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전문위원 류승우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허영 위원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다른 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잖아요.

○한기호 위원 충돌하는 건 아니고 격이 맞느냐는 얘기지.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그러니까 격과.....

결국은 사업 특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방위력개선사업과 전력지원체계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이잖아요.

○임종득 위원 방위력개선사업이지만 이게 다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대표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넣은 거예요. 우리는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처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이게 방위력개선사업 범주 안에 우주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위력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방사청 소관이라서 국방부장관이 빠지는 게 맞다고 했는데, 지금 최종안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17조 3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7조 1·2항을 보면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우주개발이라고 하는 용어와 우주무기체계라는 것 그다음에 방위력개선의 주무부처는 방위사업청이지만 방위력개선하고 국방부가 어떤 체계 문제로 제외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래서 저희도 이게 설령 국방부장관을 포함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류승우 국방부장관을 배제한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위력개선사업은 방위사업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자고 의견을 드렸고, 현재도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부처 과제인 우주위성사업들도 방위사업청장이 주관이 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조항을 보면 17조 조항도 전체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 조항이 되어 있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것도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한다는 식으로 의견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 하시면 제3항의 문구가 다시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이게 부처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장관은 국방부를 대표해 가지고 방사청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빠져 있을 때, 다른 데는 다 장관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구조상 방위사업청장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회의체계상에도. 그래서 넣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부승찬** 전문위원 말씀 중에 제가 방위사업청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다부처 사업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다부처 사업을 여기 관련해서……

○**소위원장 부승찬** 이것 말고.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그것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일관성을 유지해야지요. 어느 것은 국방부장관만 하고 어느 것은 국방부장관·방사청장 넣고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일종의 법률인데 그러면 다부처 사업은 전부 방위사업청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을 일률적으로 바꿔야지요.

○**임종득 위원** 통일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격 따지는데 무슨 우주항공청장이나 방위사업청장 둘을 놓고 보면 방위사업청장이 밑이에요?

○**임종득 위원** 밑이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장관급이긴 한데 밑이에요? 오히려 베테랑이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준에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예 다른 게 없고 이게 최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무슨 격 따지면서 사업을 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이 가면 우주항공청장한테 숙이고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통일성을 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근로·노동과 관련해 그 얘기도 있었는데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도 통일적 관점에서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으로 바뀌지 않은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게 국방부장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감사합니다.

처음이네, 처음. 한기호 위원님, 처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위원장님, 그러면 명칭은 우주개발로 하는 걸로……

○**소위원장 부승찬** 우주개발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것은 우주항공청과 협의된 안입니다.

○**임종득 위원** 우주개발이 팬찮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조건부로 했으니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류승우**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보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 법률체계에서는 방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보유할 수 없으며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물자의 양여·대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 작전 및 전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산물자를 유·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방산물자 대여제도는 무기체계 등 방산물자의 지속적인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 및 대여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방산물자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따를 경우 방산물자 대여에 따른 군의 전력 부담을 줄이고 방산업체가 신속하게 수출 홍보·전시와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는 무기체계의 무단 반출 등의 위험으로 인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승인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방산업체에서 자체 생산·보유한 방산물자의 보유 목적이 소멸되거나 승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방산물자 폐기 등 처분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하위법령 등에 마련하여 방산물자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그에 따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뤄 봐서 아는데 이건 정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출을 하려다 보면 방산업체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전력화되어 있는 부대에서 대여를 해 가지고 쓰는 문제인데 그러면 전투력이 손실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다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무기체계인데 이 관리가 잘못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영에 의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마련한다고 하는 장치만 마련된다면 이 부분은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의견 없으세요?

○ 박선원 위원 저는 없어요.

○ 허영 위원 고민 중이에요.

○ 소위원장 부승찬 이 중요한 법령에 의견이 없으면 안 되지요.

○ 한기호 위원 아니, 해 줘야 돼요.

○ 소위원장 부승찬 잠깐만요. 이견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맴버로서.

과거에 모 업체에서 전시 비축물자를 빼서 6개월 안에 채워 넣는 조건으로 수출을 했어요, 사우디에다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방산업체의 수출과 관련돼서 길을 너무 열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등’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다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 비축물자 우리한테 필요한데 신용으로 해 줄게. 전쟁이 일어날 리 없으니까 이것 일단 빼서 내가 몇 개월 만에 매꿔 줄게’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실제. 아실 겁니다.

방위사업청 차장님, 제가 무슨 말씀 하는 건지 아시지요?

○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 소위원장 부승찬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열어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등’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해요. ‘등’ 해 놓으면,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등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체화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가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런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로 하는 데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구체화를 해 줄 수 없냐 이거예요.

○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장님, 제가……

○ 소위원장 부승찬 차장님.

○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지금 이 입법 취지가 수출과 그다음에 방산업체가 연구개발을 할 때 필요한 그 두 가지 요건이고 그 외의 요건은 현재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등’ 자를 빼도……

○ 소위원장 부승찬 관계없지요.

○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이 법령에 따라서 방산업체를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현행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 놓고 방산업체가 방산물을 양여·대부 등 요청해서 군에서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속말로?

○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런데 이 항은 이제 아예 없는 거지요? 이건 아니고 ‘내가 생산해서 내가 가지고 있겠다’, 지금 개정안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닙니다. 대여는 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군수품관리 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 그 외의 경우에 적용할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군수품관리법에 의해서 대여도 가능은 합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리고 내가 생산하거나 개조하거나 개발해서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여·대부는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추가로 이걸 해주는 거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래서 ‘등’ 자가 굳이 안 들어가도……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저는 필요성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굉장히 좀 신중해지네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명확합니까? 이게 수출은 안 되고 수출을 위한 홍보·전시·연구개발 이 세 가지 목적에만 딱 부합해서 생산·보유할 수 있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지금 대상을 그렇게 한정하고자 합니다.

○허영 위원 명확하게 ‘등’ 자 없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수출을 위한 홍보·전시·연구개발을 위해서 생산·보유하는데 얼마만큼 보유할 수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만으로 저희는 조건을 정해 놓고……

○허영 위원 아니, 기간이 아니라 무기의 분량.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것도 마찬가지로……

○허영 위원 그것은 대통령령에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승인 요건과 절차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과 수량으로……

○허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걸 어겼을 경우, 그래서 홍보·전시·연구개발 목적 외에 그걸 임의적으로 막 수출하고 그랬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불법적 수출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만약에 이게……

○허영 위원 그런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국제적 테러단체나 또 테러국가나 그리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의 처벌 규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님, 만약에 무기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반출되거나 하는 거는 우리 국방기술 보호법에 따라서 강하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을 한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는 더 강한 처벌……

○허영 위원 이것은 기존의 대여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뭔가 좀 어설프고 그 수많은 방산업체들의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

지 약간 좀 의심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호들이 좀 저한테는 잡히는데.

○**임종득 위원** 허영 위원님 우려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우려하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전제 조건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여를 통해 가지고 전투 배치돼 있던 부분을 빼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문제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방산업체가 생산해서 꼭 필요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무기체계별로 한 대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 자체가 워낙 파괴적이기 때문에 통제 시스템은 하급 병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은 우리 군 차원에서는 잘 정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동의를 합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지난번에 유럽을 갔다 올 때 거기 방산전시회에 갔는데, 내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기업에서 ‘이걸 군에서 빌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가의 무기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제가 봐도 이것은 통제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임종득 위원** 통제 할 수 있으면.

○**허영 위원** 하나만 더……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그러니까 대여 제도라는 것은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이 우리 방위사업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군에.

○**허영 위원** 군에 있는 거지요, 우리 군에. 또 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기체계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방산업체에 위탁 생산을 한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허영 위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소유권은 생산업체에 있는 건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게 저는 굉장히…… 그런데 대여는 근본적으로 소유 자체를 철저한 승인 권한을 통해 가지고 대여해서 나중에 그 대여한 것을 회수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생산·보유하고 소유권이 아예 그 생산업체에 있는 거고.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러니까 그런 조금……

○**허영 위원** 생산된 무기는 그 생산업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그 관리 과정 속에서 어떠한 기간 내에 어떠한 바이어스가 껴 가지고 그 관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유출되고 불법적 유통되고 이럴 가능성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과연 되어 있나 이 얘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것은 지금 방산물자를 업체가 생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여를 해서 외국으로 전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통제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관련 기술보호 시스템도 돼 있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통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시행령에서 조건과 아까 말씀드린 기간 그다음에 필요 없어졌을 때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정할 예정이고,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설명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허영 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임종득 위원** 이해는 되는데 우려는 된다.

○**소위원장 부승찬** 이해는 되는데 우려되기 때문에 부동의?

○**허영 위원** 저는 부동의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이게 통과가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병무청은 소관 법안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병무청차장 최규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왜 앉아 계신 거예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중간에 나가기가 좀……

○**소위원장 부승찬** 제가 허락해 줘야 됩니까?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한기호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허영 위원님께서 부동의세요, 어느 항목에 불만이 있으세요?

○**허영 위원**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한기호 위원** 그러면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이건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추가해서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병무청은 자연스럽게 나가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한 요소를 더 강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원하는 거니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보니까요 우려 부분이 있으니까 허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고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서 처벌 조항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목적을 아까 같이 ‘등’을 빼고 그냥 이 목적 이외에는 불가능하게끔 하면 어떨까요?

○**한기호 위원** 좋습니다.

○**임종득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허영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회수하고 이게 명확하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폐기라는 것도 사실상은 본인들이 자체 생산·보유한 것들을 임의적으로 속이고 폐기 과정 속에서 남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을 거냐는 얘기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래서 전문위원회에서 여기에……

○**허영 위원** 우리가 대여할 때는 정확하게 개수나 이런 것들이 딱 해 갖고 회수가 안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 생산한 보유 부분들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래서 그것 보유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낸 의견을 보면 승인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그다음에 보유 중인 방산물자 관리를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 사용 목적이 끝나면 폐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분해라,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겠다라고……

○**허영 위원** 그러면 그 방산업체들 일일이, 샘플링해 가지고 임의로 찍어 가지고 몇 개 업체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전수 관리를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방산업체들이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그 전체 방산업체를 관리하는 관리조직을, 이것만 하는 관리조직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법안에서 그런 관리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저희 이 방산진흥 플러스 수출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은 우리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허영 위원** 아니,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의 법, 이 안으로는 너무나 위험성이 커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님 잘……

○**허영 위원** 방산업체가 몇 개입니까?

○**한기호 위원** 그런데 방산업체가 많아도 무기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

○**허영 위원** 아니, 몇 개 안 되면 그러면……

○**한기호 위원** 10개도 안 돼요, 무기는.

○**허영 위원** 무기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임종득 위원**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자, 무한정 토론이 되기 때문에……

○**허영 위원** 부동의가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부동의가 아니라……

○**소위원장 부승찬** 좀 보완.

○**허영 위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보완해서 다시 심의할……

○**허영 위원** 보완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예.

○**임종득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보완을 좀 시켜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아까 허영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허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자는 의미인가요, 허영 위원님? 아니면 다시 심의를 하자는 얘기이신지, 허영 위원님한테 달렸습니다.

○**허영 위원** 한 번 더……

○**소위원장 부승찬** 한 번 더 심의.

○**허영 위원** 심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과 제가 얘기한…… 저도 근본적으로는 동의해요. 동의하고 그런데 명확, 또 구체성을 띠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그것 하기 전에 여기 지금 16쪽에 방산물자 대여 현황이 금년도 1월 10일부로 죽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 있는 것들이 전부 화기 종류나 레이더 그다음에 글라이더, 엔진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우리가 대여한 거기 때문에 대여한 것에 대한 관리 이것은,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니, 그것은……

○**소위원장 부승찬** 아니, 다른 사례들이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다른 사례……

○**소위원장 부승찬** 이게 다른 사례도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여기 된 건 아니고요.

○**임종득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소위원장 부승찬** 하여튼 뭐 허영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이게 합의제로 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승우**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행연구 분석 항목을 법률에서 국방부령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과 관련한 검토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행연구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산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수정이 필요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안 제17조 제2항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의견 반영 대상기관에 현행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 및 관계 부처 외에 방산업체를 추가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료제출 요청 대상기관으로 방산업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은 마찬가

지이므로 개정안 제3항에 규정된 자료제출 요청 기관에 방산업체 외에 국방과학연구소 등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의견 반영과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선행연구 분석 항목을 법률에서 국방부령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에서 는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을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의 가능성 등으로 상세히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선행연구의 구체적 분석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 및 절차 등을 국방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하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의의 구체적 내용을 불가피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용어 정의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저촉되므로 그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하여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제17조에서 선행연구의 조사·분석 대상으로 나열된 연구개발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등의 항목은 선행연구의 조사·분석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선행연구의 항목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국방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안 제17조제4항의 국방부령 위임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아니, 동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동의한다는 거는 앞부분 그러니까 18페이지 부분은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21페이지, 20페이지 부분은 현행대로 선행연구의 내용을, 포괄위임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선행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선행연구의 내용으로 연구개발 가능성, 국가과학기술 수준, 육성 효과 그다음에 비용 대 효과 분석, 이 핵심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대로 법에 두더라도, 현행 규정대로 현행처럼 법에 두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선행연구 조사·분석 대상 그대로 놔둬라.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팬찮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해서 방사청장이 방산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방산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불만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행연구를 수행한답시고 자료를 방산업체에 계속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일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료들 다 달라고 그래 가지고는 자기들이 돌려주지도 않고, 방사청이. 이런 횡포들이 너무 많다라는 불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의 검토의견에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나 각 군, 관계부처는 규정에 포함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선행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ADD나 이쪽에 자료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방사청이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방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방사청이 갑이지요. 그러니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야 되는 거야. 법에까지 이렇게 집어넣어 벼렸을 때 갑질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불 보듯이 뻔히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기술 자체가 ADD에서 연구되어지고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요구하면 되지 그것은 포함도 안 시키고 방산업체에다가 그것을 요구하도록 법에다는 방산업체만 넣는다, 이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 데 법에 방산업체만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이제 대놓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를 제가 표현을 합니다.

○한기호 위원 방사청은 본래 갑 아니에요?

○임종득 위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본래 갑이잖아요.

○소위원장 부승찬 국장님.....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담당 국장이.....

○소위원장 부승찬 잠시만요.

한기호 위원님, 진행 좀 하게 웃기지 마십시오.

담당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방위사업청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요청서에 대해서는 각 군이라든가 국과연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있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선행연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위사업법 17조 2항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방산업체로 하여금 의견을 요청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업체에게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요청된 자료가 소요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될 때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합참하고 협의를 통해서, 소요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합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선행연구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 받을 때 마다 돈 줘요?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아니요, 저희가 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주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아니, 공짜로 달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지 뭐 주는 게 있어야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공된 자료가 어떻게 소요결정이 됐고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기호 위원** 그 자료를 줄 때 온라인으로 줘요, 물건을 들고 와요?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물건은 아니고 저희가……

○**한기호 위원** 서류나 이걸 들고 오냐 이거야. 물건이라 그러면 다 포함……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정보제공요청서를 보내고 지금 문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교통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대가 없이 공짜로 전부 다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한 번 왔다 가는 택시비라든가 KTX 비용을 준다, 당신들이 대전으로 가면 서울에서 가더라도 어디에서 가도 전부 대전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통비라도 줘야지 안 주니까 문제가 있지. 주면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못 해.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해명을 한답시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것 다 파악했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도 없는데 아주 기간이 임박하게 전화해 가지고 무슨 자료, 자료 달라고…… 그것 복사하는 데만 해도 이만큼 된다는 거야. 몇 날 며칠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휴일에도 나와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주고 뭐 달라 뭐 달라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일이천이 아니에요, 일이천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일들이 지금 법에도 안 담겨 있는데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법에 담아 주는 순간 그 갑질을 대놓고 할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법을 만들어 주냐고. 못 만들어 주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법안소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여기 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하고 죽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3항에 ‘방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수정안은 ‘제2항의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방산업체는 빠져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닙니다. 방산업체가 들어갑니다.

○**허영 위원** 아닌가요,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허영 위원** 그냥 등으로 포함되는 걸로 돼 있지 않고……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닙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종전에는 각 군과 관계부처만 돼 있다가 개정안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방산업체가 포함이 됐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고 다시 수정안 3항으로 가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

문에 ‘2항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니까 2항의 기관은 방산업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허영 위원** 의견 반영에도 방산업체가 명기됐고, 그러니까 제2항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 될 수 있으니까 방산업체도 다 포함되는 걸로 판단하시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 법을 앞으로 계속 살릴 것 같으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자료 요구 시 해당 비용을 지불하여야 된다’ 이 항목을 꼭 넣어서 교통비…… 지금 이 A4 용지 한장 복사하는 데 얼마예요? 다 돈 줘야 돼요. 그러면 마음대로 못 해. 그러면 마음대로 못 해, 돈이 적더라도. 그래서 자료 요구 시에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해서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1항·제32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산 전략기술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첨단기술의 육성, 방위사업의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해당 방위산업 분야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나 동 제도를 통해서는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의 특수성과 다른 부처에의 지정 심사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동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방위산업 전략기술과 현행 국방과학기술과의 통일성·연계성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지정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방위산업 전략기술의 지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지정 요건, 방법, 절차 등 위임의 대강을 특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과기정통부 의견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과기정통부는 모든 범부처적인 국가기술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28페이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보면 과거에도 국가전략기술 이게 과기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 우측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이것은 산업부가 어떻게 보면 산업 육성 측면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물론 오버랩,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때도 산업부가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저희는 그중에 방산 육성이나 방산 분야의 공급망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할 게 필요하다, 좀 더 집중적으로 방산을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 법을 정부가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국회의원이 발의합니까, 제가 국방위원회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부 입법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지금 법에다가 명시를 하잖아요. 법에다가 명시해 놓으면 법을 개정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주기를 법에다 명시해야 돼요. 2년 단위로 보완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검토해서 한다든가 이게 명시가 안 되면 그냥 사문화돼 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해요. 그래서 전자 분야, IT 분야는 수명 주기가 6개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려고요? 이것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 법으로 하려면, 항목을 10대 분야·30개 기술 이렇게 하려면 기술 분야가 뭐가 업데이트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주기를 1년이든 2년이든 이걸 법에다 넣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한기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조금 이상한 게, 이 방산 전략기술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아까 보고했듯이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국방전략기술이 있고 거기에는 방산 전략기술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법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10대 분야·30개 기술을 언급한다? 이건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한 거지요? 이걸 함으로써 달라지

는 게 있나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국가에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정부 지원 법률을 만들어서 유럽 같은 데는 방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임종득 위원** 그렇다면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을 법에다가 담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10대 분야·30개 기술 이 부분이 그 법의 절차에 의해서 바뀌어지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10대 분야·30개 기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바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법에 담으려면 그걸 담으세요. 방금 이야기했던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듯이, 예를 들어서 방산 전략기술을 지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선정을 하고 얼마씩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 이것 추진할 때 강제해야 될 건 뭐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방산 집중 육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 법률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좀 부족하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문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심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우**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의 예외적 공유수면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용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험평가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있어서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시급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방부장관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로 보입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예외적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용·사용 허가를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이것은 좀 국방부가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행정권한이 무너지게 되지요. 해수부가 이것에 동의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해수부는……

○**허영 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가 이것에 동의할까요? 저는 이것은 심각하고 또 그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또 사용해서 무기를 실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단독으로 이것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건 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나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른 부처에 보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대한 조항들도 있듯이 협의를 통해 해야, 그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국방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엄청난 책임 소재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을 할텐데 아무리 긴급하고 군사적이고 시급성과 기밀성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기밀성에 대해서 서로 보안을 유지하는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담보를 해야지. 저는 이것은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허영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선 이 법안을 보면 영역이 너무 포괄적이야, 이 지역이. 보세요. 여기에 공유수면에 대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야 된다’ 하고 명시가 됐는데 그뒤에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방과학연구소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장님?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한기호 위원** 국방과학연구소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바다가 있는 곳이 어디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지금 대표적인 것은 서해안 쪽의 —··—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금 장거리 L-SAM 같은 유도탄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시간의 제한, 두 번째는 지역의 제한 어떤 이런 전제가 안 붙으면, 여기 써 놓은 것이 특별자치도지사 이것 누가 해당돼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님, 그것을 보지 마시고 우측의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대한 2항부터 9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43페이지 보면 반드시 관계 부처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한기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게 법이 어디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국방과학연구소법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분명하게 제한을 줘야지만 된다 이거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콕 찍어서 얘기해야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님 말씀은 모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장관이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고 지역적인 한계, 예전적인 한계 이런 것을 좀 더 정하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뭐가 있어야지. 39쪽에 있는 신·구조문 비교 이걸로 봐서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42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조항이기 때문에 42페이지가 저희가 현재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그건 몇 쪽으로 보는 거야?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42쪽입니다.

○**한기호 위원** 42쪽?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수정사유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동의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이 소관 부처는 해양수산부인데 해양수산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아주 강력 반대하더라고요.

○**한기호 위원** 강력은 아니고 반대하겠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강력은 아니고……

○**소위원장 부승찬** 중강력?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법안을 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ADD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바다 쪽에 어떤 시간에, 꼭 필요한 시간에 통제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라든가 이쪽하고 협조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갖다 보니까 이 시험 자체에 지금 많은 딜레이가 생기고 또 하지 못해서 연구개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ADD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수면과 관련된 인허가를 해당 청장, 공유수면관리청에 있어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이 부분을 하되 기존에

하게 되어 있던 아까 2번에서 9번까지 조항들을 다 협의를 합니다. 관리청하고도 하고 지자체하고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열어 두자 하는 부분의 법안 제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방금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허영 위원이 이야기 하셨던 우려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지요.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험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도 공군 사격하는 데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풀어 주기는 풀어 줘야 되는데 우선 전제가 해양수산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이 법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가지고 오면 거기서 넣어 달라는 것은 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이게 올라가면 법사위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해양수산부가 반대하는데 안 해 주지.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해양수산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보다 관련 내용을 본법인 공유수면법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자 이렇게까지는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그렇게 담아서 저쪽으로 넘겨요, 해양수산부 법으로.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런데 저희가 사실 주관 관청 입장에서는 여기서 해 주시면 거기가 압박을 느낄 텐데 여기서 드롭하면 거기도 안 할 것 같아서.

○**소위원장 부승찬**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저는 아주 특정지역의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점용 문제를 이 법을 이렇게 해 가지고 무소불위한 전 지역의 점용……

○**임종득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허영 위원** 저는 그 소지가 다분해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 자체를 아예 국방부나 이쪽에서 획득을 하고 그 소유권에 기반해 가지고 사용하고 점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점용·사용에 대한 권한을 법상에 또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엄연하게, 여하튼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법이다 생각을 하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마차진에 대공사격을 하는 것도 공유수면 사용을 해야 돼서 어선들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서해안 같은 경우 안흥사격장에서부터 사격을 하고 하면서 바다에 대한 통제권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되는데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양쪽이 협의할 수 있는 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제한적으로 될 수 있는 표현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협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 김병주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21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법안소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얘기한 게 왜 사전 설명을 하지 않느냐 이 얘기 를 계속하지요. 그렇지요? 수없이 들었지요, 차장님?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많이 들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한 게 작년 11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월 달

한 달, 1월 달 한 달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리고 상정한 게 이번 달 11일 날 상정했거든.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욕심이 많아 가지고 두 달 만에 상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정부 측이나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양일 간 심도 있는 법률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 부분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7인)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윤상현 임종득 한기호 허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김선희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법무관리관 홍창식

계획예산관 신태복

인사기획관 오영대

동원기획관 김신숙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첨단전력기획관 최장식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유균혜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강정화

미국정책과장 장창식

전력정책과장 이성은

병무청

차장 최규석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입영동원국장직무대리 배철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준식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방위산업진흥국장 김일동

국방기술보호국장 한경수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정규현

정책조정담당관 김경호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이정석